

제15회 노동권익포럼

# 여성 노동자의 건강권, 서울에서 찾기

일시 | 2018년 12월 14일 (금) 14:00~16:00

장소 | 가회동 주민센터 대강당

^^^  
서울노동권익센터

# 여성 노동자의 건강 실태 와 지방 정부의 역할

김 현 주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

## 서울, 여성, 노동, 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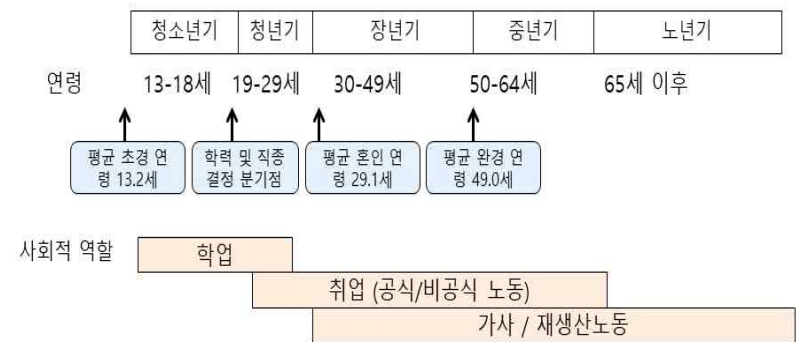
1. 여성의 건강에 관한 몇 가지 사실
2. 여성 노동자의 건강 : 불평등의 발생기전
3. 한국 여성 노동자 건강권 운동의 역사
4. 여성 노동자 건강사업 : 지역사회 접근 사례
5. 서울시의 역할과 과제

# 1. 서울 여성의 건강에 대한 몇 가지 사실

## 여성의 생애주기

사회적 결정요인

소득, 고용, 교육, 젠더불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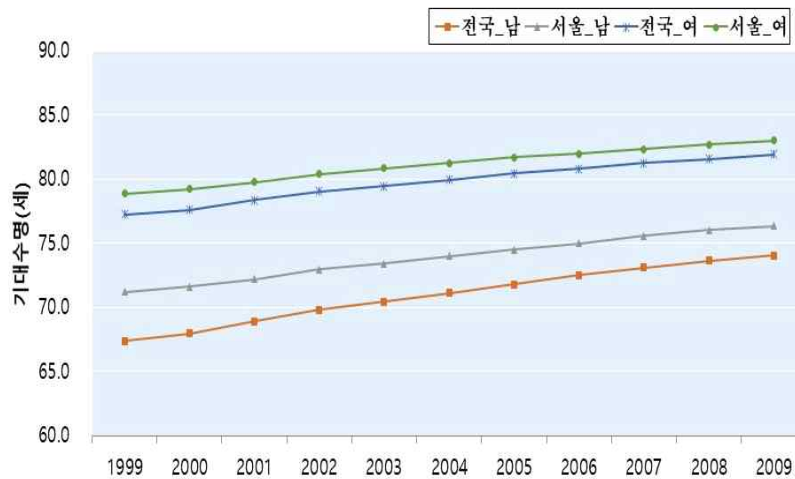
건강지표 영역 사망, 주관적 건강, 만성질환, 정신건강, 건강행태, 성건강, 재생산건강, 의료이용

정최경희 등, 2011

# 생애주기별 주요 건강문제

생애주기	주요건강문제
청소년기 (7-18세)	· 남녀간 이환율 차이 적음 · 저체중(무리한 다이어트), 영양불균형 · 여성 흡연을 증가 추세
가임여성 (19-44세)	· 생식건강 : 인공유산, 모유수유 · 일반건강 : 만성질환이환, 비만증가 시작 · 흡연, 음주, 영양, 신체활동 부족
중장년기 (45-64세)	· 근골격계질환(관절염, 요통, 좌골통 등) · 고혈압, 당뇨병 등 대사성 질환 · 비만, 신체활동 부족 · 우울증, 스트레스, 요실금
노인기 (65세이상)	· 여성노인 10명중 9명 만성질환자 · 여성노인의 활동제한 ·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남성보다 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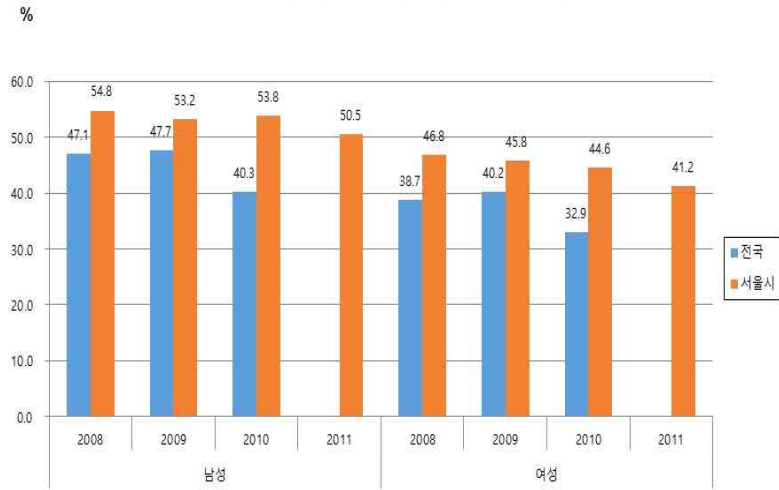
## 1. 여성은 남성보다 오래 살지만,



1999-2009년 기대여명의 추이

주민등록통계자료 및 사망원인통계자료

## 건강수준은 더 나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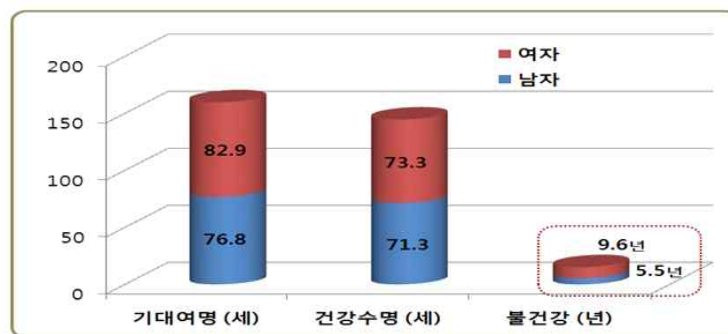


### 자가평가 건강수준 양호의 분율

전국 자료: 2010년 국민건강통계(국건영 자료), 만 19세 이상 2005년 인구를 이용한 표준화  
 서울시: 2008-2011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이용한 만 20세 이상 인구에서 2005년 인구를 이용한 표준화를  
 자가평가 건강수준 양호: 전국, 서울, 강동구 모두 자가평가 건강에서 "매우 좋음"과 "좋음"으로 응답한 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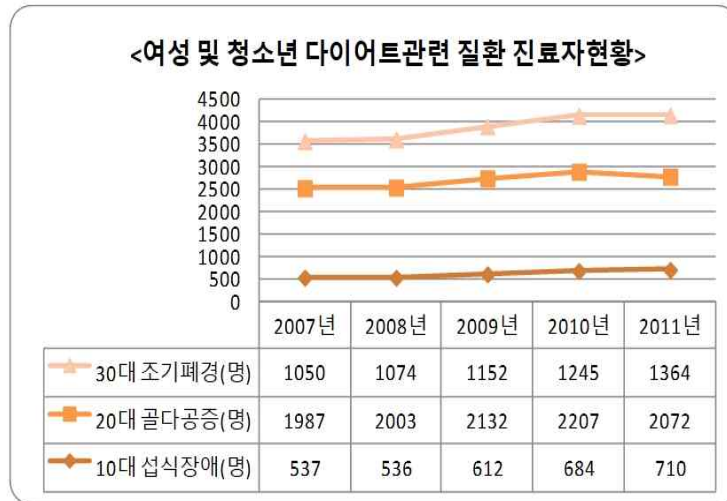
정최경희 등, 2011

## 즉, 여성은 불건강하게 더 오래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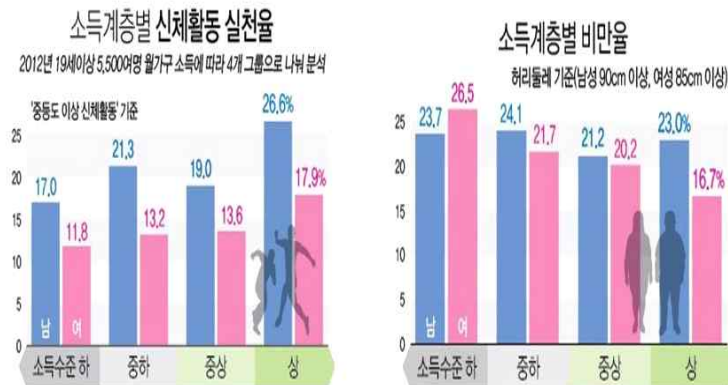
여성의 불건강 기간은 10년으로 남성 5.5년의 약 2배정도  
 (\*12년 보건사회연구원 자료)

## 2. 왜곡된 신체이미지는 젊은 여성의 건강을 해친다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3. 특히 가난한 여성은 더 뚱뚱하고 운동하기 어렵다



자료: 보건복지부(연합뉴스 2014)

## 4. 뇌심혈관질환은 환경 이후 증가한다.

### ❷ 뇌심혈관질환이란

- 심혈관질환(심근경색, 협심증)과 뇌혈관질환(뇌졸중, 뇌출혈)은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2위와 3위를 차지하는 치명적인 질환이지만, 예방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 흔히 중년 남성들에게 많은 병으로 알고 있지만, 여성은 환경(폐경)이 되면 뇌심혈관질환 발생위험이 급격하게 높아져, 70대가 되면 남녀 간 차이가 없어집니다.

### ❷ 여성의 심혈관질환 사망률이 높은 이유

- 환경기에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동맥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과 심장근육이 두꺼워지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뇌심혈관질환 발생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 여성의 뇌심혈관질환은 남성과 달리 가슴통증, 호흡곤란과 같은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고 피로감, 메스꺼움, 우울한 기분, 숨이 차거나 불안감이 높아지는 증상 등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 때문에 여성 심혈관질환 환자의 15%는 화병으로, 25%는 위장병으로 오해하고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 5. 여성은 우울증에 더 많이 걸린다

### ❷ 여성의 우울증 유병률이 남성보다 두배 더 높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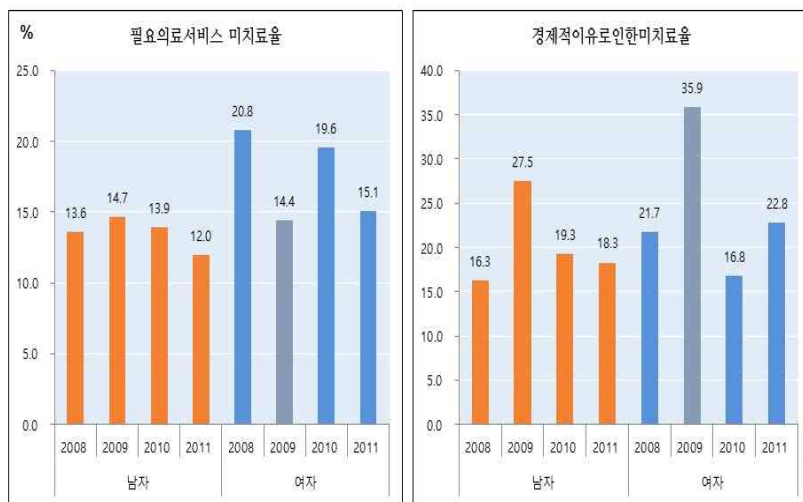
- **생물학적 이유** : 임신, 출산, 환경(폐경)등 에스트로겐을 비롯한 성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가 우울증상에 영향을 미치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처럼 우울증상을 동반하는 질환에 남성보다 더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 **사회심리적 이유** : 빈곤, 시댁 스트레스, 성적인 학대, 성차별 등 심리적인 스트레스에 남성보다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 6. 여성은 근골격계 통증을 더 많이 경험한다

- 관절염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 : 여성 27.4%, 남성 7.0%
- 골다공증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 : 여성 22.0%, 남성 : 1.4% ('11년 서울시 지역사회 건강통계)

## 7. 아파도 의료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



### 미충족의료율\_강동구

2008-2011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이용한 만 20세 이상 인구에서 2005년 인구를 이용한 표준화를  
 미충족 의문은 최근 1년 동안 필요한 의료서비스(지과 미포함)를 받지 못하였다고 응답한 비율  
 교육수준 낮음: 20-49세 고졸 이하, 50-64세 중졸 이하, 65세 이상 초졸 이하, 교육수준 높음: 20-49세 대졸 이상, 50-64세 고졸 이상, 65세 이상 중졸 이상

## 2. 여성 노동자의 건강 : 불평등의 발생기전

### 성별 노동 통계

<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및 실업자<sup>1)</sup> : 1980~ 2012년 >

(단위: 천명, %, %p)

연 도	15세이상 인 구	경제활동 인 구	참가율			취업자	여자취업자 구성비	실업자	실업률
			남자	여자					
1980	24,463	14,431	59.0	76.4	42.8	13,683	38.2	748	5.2
1990	30,887	18,539	60.0	74.0	47.0	18,085	40.8	454	2.4
2000	36,186	22,134	61.2	74.4	48.8	21,156	41.4	979	4.4
2001	36,579	22,471	61.4	74.3	49.3	21,572	41.7	899	4.0
2002	36,963	22,921	62.0	75.0	49.8	22,169	41.6	752	3.3
2003	37,340	22,957	61.5	74.7	49.0	22,139	41.1	818	3.6
2004	37,717	23,417	62.1	75.0	49.9	22,557	41.5	860	3.7
2005	38,300	23,743	62.0	74.6	50.1	22,856	41.7	887	3.7
2006	38,762	23,978	61.9	74.1	50.3	23,151	41.9	827	3.5
2014	42,513	26,536	62.4	74.0	51.3	25,599	42.0	937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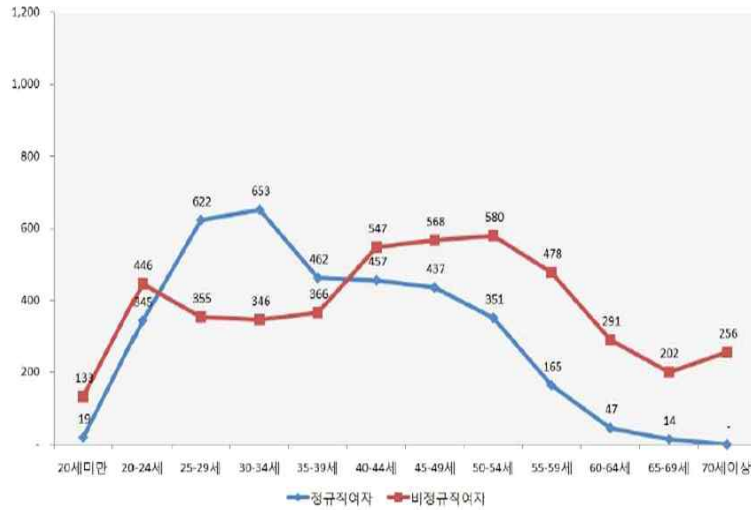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주 : 1) 1980, 1990년은 '구직기간 1주' 기준, 2000년부터는 '구직기간 4주' 기준 적용함

16

## 성별 노동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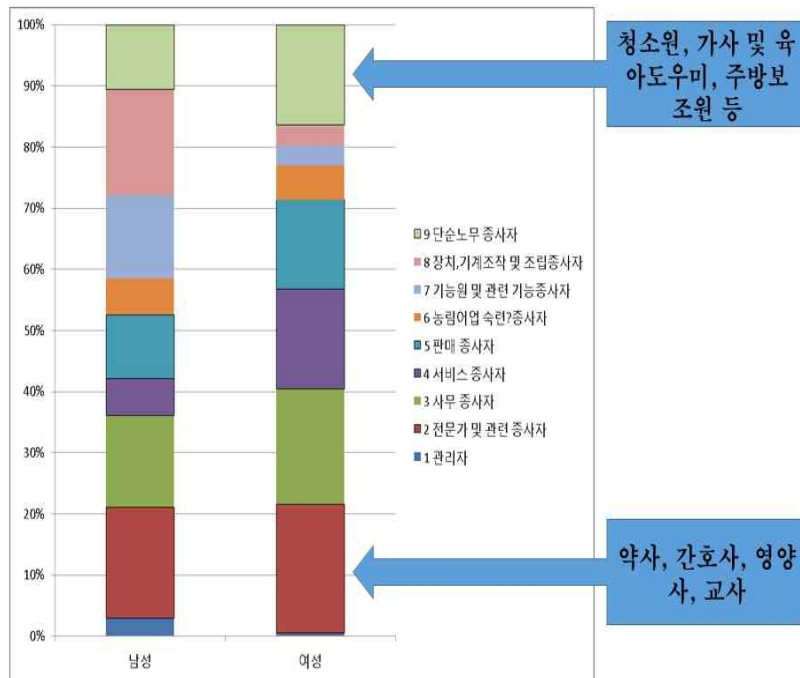
여성의 고용형태별 연령별 분포 (2014년 8월, 단위: 천 명)



김유선, 2014년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17

## 성별 노동 통계: 성별 직종 분포 (2012)



통계청, 2013

18

## 성별 노동 통계

〈표 18〉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별 구성비

	취업자	비임금			임금			
		근로자	자영업주	무급가족 종사자	근로자	상용	임시	일용
여성	100.0	24.6	14.8	9.8	75.4	42.1	27.4	
2000	6.0 (2014)				43.3%			
2003	100.0	34.4	17.8	16.7	65.6	23.2	31.0	11.4
2005	100.0	32.9	19.0	14.0	67.1	25.6	30.2	11.3
2006	100.0	32.3	18.8	13.5	67.7	27.0	30.0	10.8
남성	100.0	28.4	27.4	7.0	71.6	51.4	14.1	
2000	6.1 (2014)				56.7%			
2003	100.0	35.3	34.0	1.3	64.7	39.6	16.7	8.4
2005	100.0	34.0	32.8	1.3	66.0	41.1	16.4	8.5
2006	100.0	33.2	32.0	1.2	66.8	41.6	16.6	8.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보고서」 각년도 (단위 : %)

19

## 성별 노동 통계

성별 비정규직 규모 (2014년 8월)

	수(천 명)		비중(%)		분포(%)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임금노동자	10,635	8,141	100.0	100.0	566	434	
정규직	6,682	3,572	62.8	43.9	652	348	
비정규직	3,953	4,569	37.2	56.1	464	536	
고용계약	임시근로	3,836	4,389	36.1	53.9	466	534
	장기임시근로	2,175	2,642	20.5	32.5	452	548
	한시근로	1,661	1,747	15.6	21.5	487	51.3
	(기간제근로)	1,341	1,409	12.6	17.3	488	51.3
근로시간	시간제근로	587	1,445	5.5	17.7	289	71.1
근로제공 방식	호출근로	557	248	5.2	3.0	69.2	30.8
	특수고용	189	335	1.8	4.1	36.1	63.9
	파견근로	80	114	0.8	1.4	41.0	58.5
	용역근로	326	278	3.1	3.4	54.0	46.0
	가내근로	4	54	0.0	0.7	6.9	93.1

김유선, 2014년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20

## 노동과 건강불평등 기전: 저임금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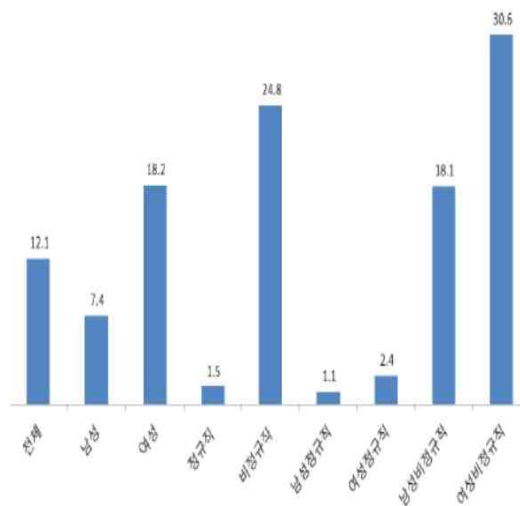


김유선, 2012년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21

## 노동과 건강불평등 기전: 저임금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 (2014년 8월 %)



2014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5,210원.

김유선, 2015년 여성 비정규직 실태와 정책과제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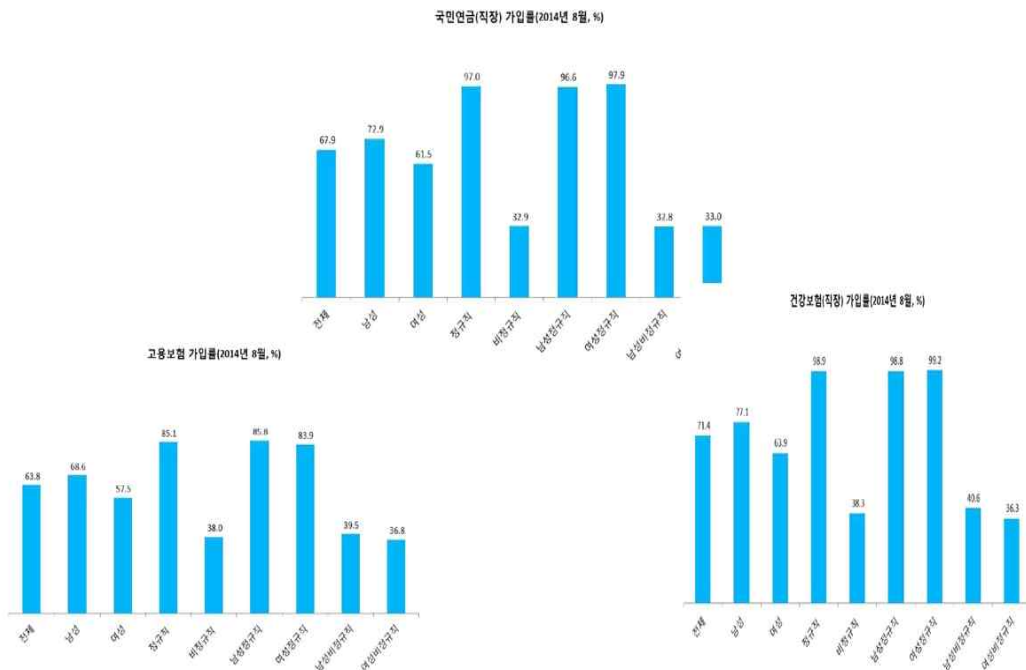
## 성별 생활시간

가구유형별	행동분류별	여성배우자	남성배우자	차이
맞벌이가구	개인유지	10:26	10:40	-0:14
	일	5:06	6:20	-1:14
	학습	0:01	0:01	0:00
	가정관리	2:38	0:24	+2:14
	가족 보살피기	0:42	0:13	+0:29
	참여 및 봉사활동	0:02	0:01	+0:01
	교제 및 여가활동	3:06	3:58	-0:52
	이동	1:42	2:09	-0:27
	기타	0:17	0:15	+0:02
비맞벌이가구	개인유지	10:40	10:46	-0:06
	일	0:02	6:08	-6:06
	학습	0:02	0:01	+0:01
	가정관리	4:11	0:19	+3:52
	가족 보살피기	2:07	0:20	+1:47
	참여 및 봉사활동	0:04	0:01	+0:03
	교제 및 여가활동	5:14	4:02	+1:12
	이동	1:21	2:09	-0:48
	기타	0:19	0:15	+0:04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09

23

## 노동과 건강불평등 기전: 사회안전망



김유선, 2015년 여성 비정규직 실태와 정책과제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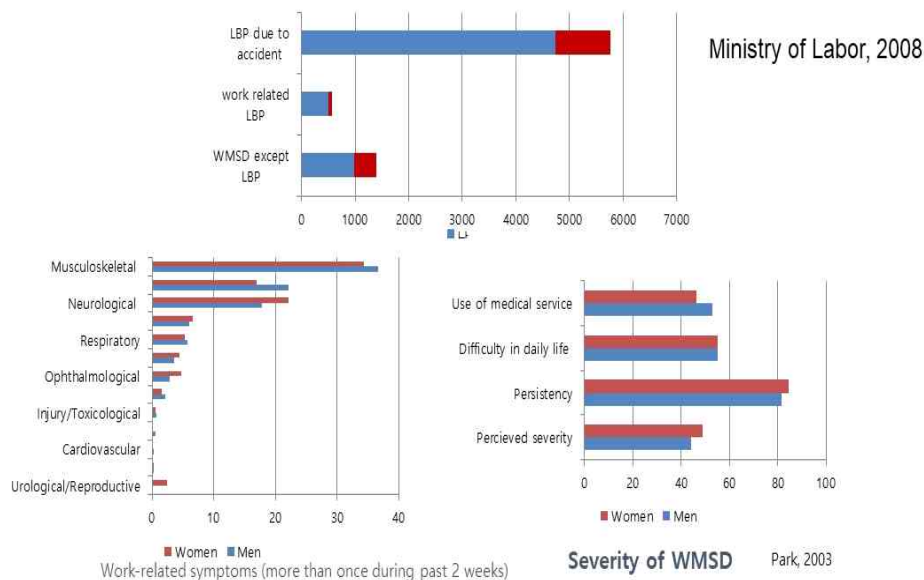
#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

## Summary of the OSH regulations

		Liabilities/supplementary provisions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Committee	Companies with $\geq 100$ employees (Labor-management council could replace it in companies with $\leq 1000$ employees)
	Safety and Health Manager	Companies with $\geq 50$ employees
	Safety Manager	Companies with $\geq 30$ employees (Companies with $\leq 300$ employees could commission it)
	Health Manager	Companies with $\geq 50$ employees (Companies with $\leq 300$ employees could commission it)
	Honorary Safety Inspector	Companies with $\geq 100$ employees could designate it under the labor-management agreement
Work environment monitoring and management	Work environment monitoring	Every workplace, twice a year, 191 agents defined by the law
	Survey of MSD risk factors	Every relevant workplaces, every three year
	Management of job stress	(no specific rules or penal provisions)
Control of occupational diseases	Special medical exam	Every workplace, twice a year
	Job stress-related illness	For workers with high job stress should be provided with prevention program for cerebro-vascular diseases

## 산재보상에 대한 접근

Numbers of the Musculoskeletal disorders by gender (Workers' compensation data)



### 3. 한국 여성노동자 건강권 운동의 역사

## 여성 노동자의 건강이야기를 기록하다

---

**NEW SOLUTIONS: A Journal of Environmental and Occupational Health Policy**

**Issue:** Volume 17, Number 4 / 2007

**Pages:** 325 - 343

**URL:** [Linking Options](#)

#### **An Untold Story in Labor Health: Korean Women Workers**

Myoung-Hee Kim and Hyun-Joo Kim

#### **Abstract:**

Very little is known about labor health among Korean women workers, who have been left behind by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institutions. In this article, we examine, from a gender perspective,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SH) statistics, institutions, and the struggles of women workers, and discuss how to make a society where women workers become and stay healthy. The problems Korean women workers face have both universal and unique aspects. On the one hand, they tend to be exposed to "invisible hazards" and to disproportionately suffer from neo-liberal policies, as do women workers in other countries. On the other hand, Korean women workers are still positioned under the strong patriarchy found in pre-modern societies. The examples of struggle presented here come out of this condition; those struggles by women workers and support from concerned specialists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overcoming patriarchy and protecting health rights for women workers.

---

# 한국 여성노동자 건강권 운동 :2000-2009

2000	직장 내 여성에 대한 폭언, 폭행 실태와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한국여성노동자회
2001	골프장 경기보조원 건강실태 조사	노동건강연대
2002	모성보호제도 사용실태 및 활성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	한국여성노동자회
2003	비정규직 모성보호 차별 현실 진단 및 대안 모색 토론회	한국여성노동자회
2003	특수고용노동자 산재적용 방안 제도 개선 대응 활동	한국여성노동자회
2003	청구성심병원 집단산재인정 및 사업주 처벌을 위한 투쟁지원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2004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의 건강 및 작업환경 개선 토론회	노동건강연대
2007	일하는 여성의 건강이야기 발간(간병, 의류제조, 급식조리, 캐셔 등)	노동건강연대
2007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결성	한노보연
2008	'서서 일하는 서비스 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캠페인	한국여성노동자회
2008	보육교사 노동안전보건 실태조사	노동건강연대
2008	비정규직 투쟁 사업장 노동자들의 정신 건강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노동건강연대
2008	출판 편집 디자이너 실태조사	노동건강연대
2009	돌봄노동자 성희롱 실태조사	한국여성노동자회
2009	법원속기사 노동환경 및 건강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노동건강연대
2009	농협 여성 노동자 건강권 사업	한노보연
2009	고려대학교 병원 노동자 교대제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한노보연

# 여성노동과 건강권 실태조사 :2010-

2010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건강실태조사 및 기자회견	노동건강연대
2012	가사간병노동자의 실태와 노동권 보장방안 토론회	한국여성노동자회
2012	학교급식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연구(강원도 교육청)	한노보연
2012	30인 미만 서비스업종 모성권, 성희롱 실태조사	한국여성노동자회
2013	'투명인간' 여성비정규직 여기에 있다 : 공공부문 여성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분석 토론회	한국여성노동자회
2013	'가사노동자 건강을 말한다' 가사노동자 일과 건강 실태조사 및 토론회	한국여성노동자회
2013	가사관리사의 일과건강 실태조사	노동건강연대
2013	민간.공공 서비스산업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실태조사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2013	경희대 청소노동자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한노보연
2015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 모성보호 등 인권 실태조사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2016	고속도로 요금 수납 여성 노동자 안전보건 실태조사 및 개선을 위한 기자회견	일과 건강 /노동환경건강연구소
2017	학교급식조리노동자 근골격계질환 실태조사 및 개선사업(광주, 전남, 경기, 서울교육청)	일과 건강 /노동환경건강연구소
2018	직장내 괴롭힘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노동건강연대
2018	요양보호사 감정노동 실태조사 및 매뉴얼 제작/배포 사업	일과 건강 /노동환경건강연구소
2018	제빵 노동자 안전보건 및 모성보호 실태조사 사업	일과 건강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사정상 안전보건교육,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다 적지 못했습니다!

## 한국 통신 전화교환업무 여성 노동자들의 경건완 장애 산재인정

구로의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일과건강

- 컴퓨터 단말기를 사용하여 전화 번호 안내 및 교환 업무를 하루 평균 125콜을 수행함.
- 노동조합 실태조사결과 3220명 중 32.2%가 직업병 의심
- 265 명의 노동자가 산재보상을 받음



Source : Korean telecom union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5호를 신설('02.12.30)하여 사업주에게 보건상의 조치로 근골격계질환 예방의무 부과('03.7.1일 시행).

## 공공부문 급식 노동자도 노동자다



- 2003년 한국 여노와 노동건강연대가 3개 초등학교 급식노동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 조사와 인간공학적 평가결과 확인된 내용
  - ✓ 작업관련 근골격계 증상 유병률의 증가
  - ✓ 높은 직무요구도
  - ✓ 피부질환
  - ✓ 소음과 고열 관련 손상
  - ✓ 높은 직무요구도와 낮은 직무재량도
  - ✓
- 중년 여성 노동자들의 급식업무가 여성들이 흔히 하는 일이기 때문에 '노동'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사회적 분위기가 있던 상황에서 건강권 실태조사를 통해 노동자임을 주장한 최초의 사례임.



## 서비스 여성 노동자들이 만들어낸 변화

- 의자 캠페인
- 감정노동자 보호법



## 2008년 서서 일하는 서비스 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캠페인



2006년 12월 19일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06년 제4차 회의에서 취약분과 건설과 관련한 방침 결정(유통서비스여성노동자를 중심으로 모범 활동사례를 만들어 취약분과 전체적으로 확산)

2008년 6월 30일 캠페인단 발족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건강과 안전이 법에 의해 제도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설령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장하기 쉽지 않지만, 자신들의 노동이 현재와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모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고객이 없을 때 앓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노동자들 얼굴 가득 기쁜 웃음이 피어 오르는 것을 보면서, 현실적 목표를 구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의 중요성을 더욱 크게 느낄 수 있었다"

일과건강 2008년 6월호 기획특집

# 의자비치 10년

유통업계 판매직 '의자는 그림의 떡... '앉을 권리' 달라'  
고용부 대형유통사 의자 비치 규정 만들었지만 10년째 그대로

입력 2018.10.02 14:23

- 2008년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노동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갖춰 줘야 한다'를 마련했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는 자율규정에 그치다보니 유명무실한 조항에 그쳤다.
- 이에 고용부는 지난 8월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작업장 내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휴게실 면적은 1인당 1㎡, 최소 6㎡미터를 확보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만약 건물 외부에 휴게실에 설치할 경우 100m 이내나 걸어서 3~5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곳에 마련하도록 했다.
- 또 고용부는 지난달부터 청소·경비용역 사업장과 백화점·면세점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휴게시설 설치·운영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이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업체에서는 급히 의자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부 실태점검 체크리스트에는 의자 비치 여부만 포함돼 있어, 의자가 있어도 앉지 못하는 현실 등은 반영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 유통서비스 노동자들이 롯데백화점 문앞에서 '앉을 권리'를 촉구했다.

(아이뉴스24)

# 2015년 3월 감정노동네트워크 출범



감정노동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단체

노동(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유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광공업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유정노동조합, 미래창조과학부노동조합, 희망연대노동조합, 청년유니온, 일반노동조합
연구소(4)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일과 건강
여성(3)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여성환경연대
의학(1)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회
법률(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종교(1)	전주교 노동사목위원회
후원	한영숙, 심상정, 이인영, 장하나, 김기식, 윤자옥의원실, 국가인권위원회



## 2016년 서울시 공공부문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조례 2018년 10월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



‘감정노동보호 가이드라인’ 지자체 최초 배포 및 시행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소속 ‘감정노동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서울시 감정노동보호 가이드라인’을 지자체 최초로 배포하고 시행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 및 투자 출연기관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세부 매뉴얼을 오는 8월까지 수립해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출처 : 코리아스피릿(<http://www.koreanspirit.com>)

### ‘감정노동자 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한정에 의원 최초 발의, “현장 정착 위해 법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

댓글 0 트위터 0 페이스북 0



감정노동자를 위한 법이 현장에 적용될 전망이다.

한정에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통과된 감정노동자 보호법은 현대 사회에서 서비스산업 등 감정을 절제해야 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정에 의원실에 따르면 감정노동자의 노동은 자신의 심리상태를 통제하고 서비스 이용자 소비자의 요구에 정서적으로 ‘진절할 응대’를 요구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감정노동으로 인한 재해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 전자산업 노동자 건강문제

### 반도체 노동자에게 건강과 인권을!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과 함께 해주세요



전자산업 노동자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라  
No more death in SAMSUNG  
Respect Labor Rights



제조업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가 전자산업에 종사 하고있고, 한국경제에서 전자산업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전자산업은 기술개발이 빠르고 제품의 수명이 짧다.....신제품이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면 급속히 팽창한뒤 과잉공급으로 이어지는 패턴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물량변동이 잦다.이에 따라 전자산업은 위기비용을 전가하고 생산의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로 생산을 외주화하는 특성을 가진다.... 시장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른 단가인하 압력과 경기변화에 따른 물량변동은 노동자의 임금과 고용의 불안으로 이어진다...여성노동자들은 남성노동자들에 비해 임금이 낮고 근속연수가 짧다. 이처럼 전자산업 여성과 남성간 임금격차가 큰 원인은 성별직종분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유미, 전자산업 여성노동자의 실태와 요구)

# 2016년, 삼성 휴대폰 신제품 출시를 앞둔 겨울, 쉬지 않고 일했던 청년노동자들, 메탄올 중독으로 7명 실명

한국산업안전학회지, 제27권 제1호(2017) ISSN 2384-1229(Print) ISSN 2386-9584(Onlin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ygiene, 2017, 27(3): 145-152  
 http://dx.doi.org/10.15289/ksioh.2017.27.3.145

**Case Report**

**왜 21세기 한국 시업장에서 메탄올 중독 실명 사고가 발생했을까?**

이근택<sup>1</sup>, 이상윤<sup>1</sup>, 박혜영<sup>1</sup>, 경태선<sup>1</sup>  
<sup>1</sup>아주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노동건강연대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Article**

**Toxic Effects of Methanol among Illegally Dispatched Workers at Aluminum CNC Cutting Process in Small-Scale, Third-Tier Subcontractor Factories of Smartphone Manufacturers in the Republic of Korea**

Chang Won Kang<sup>1</sup>, Hyeonjo Kim<sup>1,\*</sup>, Kyungsook Shin<sup>2</sup>, Ju Rye<sup>3</sup>, Kyunghye Jung-Choi<sup>1</sup>, Key Hwan Lim<sup>4</sup> and Jui-Ha Kim<sup>1</sup>



2014년 산재신청자(일곱번째 확인)	2016년 1월 첫 환자 발견 (이대륙동병원 응급실)	2016년 2월 네번째 환자 발견	2016년 1월 세번째 환자 발견	<b>불법파견노동</b>
	2016년 1월 일주일뒤 두 번째 환자 발견	2016년 9월 다섯번째 환자 발견	2016년 9월 여섯번째 환자 발견	

## 계속 되는 이야기



# 계속되는 우리의 과제

The right to be safe and healthy from danger

Guarantee workers, residents and consumers all over the right to know chemicals

Protect workers' mental health from emotional labor, bullying work, and sadistic labor management

Accidental death is murder. Establish a Law for Severe Accident Firms Punishment

<p><b>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b></p> <p><b>생명 안전법 헌법 개정 촉구</b></p> <p><small>한국노동자연맹 2024년 2월 14일</small></p>	<p><b>노동자, 주민, 소비자 화학물질 알권리 전면 보장하라</b></p> <p><small>한국노동자연맹 2024년 2월 14일</small></p>
<p><b>여성, 이주, 장애인, 청소년, 비정규직 소수 노동자 건강권 보장하라</b></p> <p><small>한국노동자연맹 2024년 2월 14일</small></p>	<p><b>장시간 노동 OUT 근거법 59조 특례폐기 과로사 OUT</b></p> <p><small>한국노동자연맹 2024년 2월 14일</small></p>

Ensure the health rights of social minorities such as women, migrants, people with disabilities, youth irregular workers

Long-time work out, abolish the Labor Standards Act, Article 59

<p><b>감정노동, 일터괴롭힘, 가학적 노무관리 노동자 정신건강 보호하라</b></p> <p><small>한국노동자연맹 2024년 2월 14일</small></p>	<p><b>산재사망은 살인이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b></p> <p><small>한국노동자연맹 2024년 2월 14일</small></p>
<p><b>노동자, 시민 생명 안전 위협하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라</b></p> <p><small>한국노동자연맹 2024년 2월 14일</small></p>	<p><b>살아오는 동안엔 원죄노동자 함께잡는 황유미</b></p>

Prohibit the outsourcing of risk

# 한국 여성 노동자 건강권 운동의 교훈



## 4. 여성 노동자 건강관리 사업 지역사회 접근 사례

서울시 여성건강관리사업  
서울근로자건강센터

### 서울시 여성건강관리사업 : 2012년 금천구 사업목적과 목표

- 금천구 디지털 산업단지의 여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성인지적 건강증진 활동을 추진하여 작업관련질환의 감소 및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며, 구체적인 사업목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금천구 여성 노동자들의 건강위험요인의 분포, 건강수준, 그 관리 실태 및 건강증진 요구도를 파악하여 여성건강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 둘째, 지역 사회내에 여성 건강증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여성 건강증진사업의 기반을 구축한다.
- 셋째, 여성 노동자의 수가 많거나 여성 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업종에 대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하여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한다.
- 넷째, 금천구 사업의 결과에 근거하여 서울시에서 일반화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여성건강증진 사업모델을 제시하고 그 시행지침을 개발한다.

## 여성의 건강

- 1995년, 북경 제4차 세계여성대회,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한 5대 과제를 제시함
- 2010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앞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 젠더 형평성, 생식건강보호를 위한 사회적 노력 등이 더 필요하다고 제기함
- 여성 자신의 건강문제에 대한 전인적인 접근이 필요함
  - ✓ 생애주기별로 특수한 건강문제(가임기의 건강문제) + 전 생애를 관통하는 다양한 건강 결정요인
  - ✓ 노동환경은 성인 여성이 노출되는 주요한 건강위험요인

## 여성의 노동과 건강

- **노동의 성별 분업**
  - ✓ 여성들은 대개 사무, 서비스, 판매직에 집중되어 있으며,
  - ✓ 같은 직업군 내에서도 여성이 종사하는 직업 분포가 남성과는 매우 다름
    - 보건 의료 : 간호사, 간병인 (의사), 제조업 생산직 : 섬유, 전자산업 종사 (자동차, 중공업), 단순노무직 : 가사 및 청소 업무 (건설 잡부)
- **사회적인 성 고정관념** : 가정내 여성의 역할이 사회적으로 확장된 형태
  - ✓ 강도 높은 감정노동 수행 → 소진, 우울증 등의 정신건강문제 발생
  - ✓ 돌봄 노동자, 웨이트리스, 콜센터 노동자 등
- **육체노동의 경우** :
  - ✓ 물리적 힘을 요구하는 육체적 강도는 낮지만 빠르고 정교한 반복 작업
  - ✓ 서서 일하는 작업처럼 같은 자세를 지속하는 작업
  - 근골격계질환의 유병률이 남성보다 높지만, 예방대책은 상대적으로 소홀

## 성인지적 직장건강증진

### • 성인지적 관점

- ✓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정책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함
- ✓ 성별영향평가분석 실시
- ✓ 직장 건강증진은 건강보호의 개념을 포함하며, 직업병 및 작업관련질환의 예방에 초점을 맞춤

### • 성인지적 직장건강증진

- ✓ 양성의 건강수준 향상이라는 목표로, 사업대상선정의 젠더 형평성이 담보되며, 사업추진방식과 내용에서 성별 특성 고려해야.
- ✓ (대규모 제조업 남성 노동자의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요통 예방 >> 소규모 서비스업 여성 노동자의 서서 일하는 작업으로 인한 하지정맥류 예방)

## 금천구 산업별 종사자수 및 여성 구성비 (2010년 사업체 실태조사자료)

구분	종사자수(명)			여성 구성비(%)
	계	남	여	
전산업	185,937	120,795	65,142	35.03
C. 제조업	41,935	26,840	15,095	36.00
G. 도매 및 소매업	29,138	18,176	10,962	37.62
I. 숙박 및 음식점업	8,536	2,738	5,798	67.92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6,994	20,010	6,984	25.87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6,418	19,486	6,932	26.24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1,533	6,301	5,232	45.37
P. 교육 서비스업	5,244	1,594	3,650	69.60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050	765	3,285	81.11



## 가산디지털 산업단지 업종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수

		정보통신	전기전자	비제조	임대 업	기계	섬유	석유화학	인쇄	기타	합계
사업체수	개	1,807	17,02	859	809	469	393	185	171	298	6,693
	%	27.0	25.4	12.8	12.1	7.0	5.9	2.8	2.6	4.4	100
종사자수	명	29,050	19,950	17,493	815	4,590	7,236	2,138	3,343	4,169	88,784
	%	32.7	22.5	19.7	0.9	5.2	8.2	2.4	3.8	4.7	100
여	명	6,730	5,537	4,145	148	989	3,826	635	1,108	1,397	24,515
	%	27.5	22.6	16.9	0.6	4.0	15.6	2.6	4.5	5.7	100
여성비율(%)		23.1	27.8	23.7	18.2	21.5	52.9	29.7	33.1	33.5	27.6

## 금천구 여성건강관리사업 대상 선정

- 여성의 구성비가 높은 산업(2010년 금천구 사업체 조사보고서)
- 여성의 수가 많은 산업(구로금천지역 노동환경실태조사, 2011)

	인구학적 및 고용특성	건강위험요인	주요 건강문제
1	<b>제조업(전자산업/의류제조업)</b> 여성 노동자의 24% 중고령 여성 노동	장시간 노동, 예측하기 어려운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높은 노동강도, 반복작업	근골격계 질환 뇌심혈관질환
2	<b>출판정보서비스업</b> 여성 노동자의 18% 젊은 연령대	장시간 노동, 직무스트레스, 근골격계 부담작업	근골격계 질환, 정신건강
3	<b>전문기술서비스업</b> 여성 노동자의 17% 젊은 연령대	장시간 노동, 근골격계 부담작업	근골격계 질환
4	<b>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b> 여성 노동자의 16%, 주로 건물청소업 고령 노동자, 모두 간접고용	장시간 노동, 야간 노동, 소음, 진동, 먼지	뇌심혈관계질환 호흡기 질환
5	<b>도소매업</b> 여성 노동자의 9% 여성비율 64%.	감정노동, 입식작업	허리/하지의 근골격계 질환 정신건강문제

## 여성건강증진 사업 요구도평가

- 여성 노동자 건강증진 사업전략 수립의 기초 자료 확보 및 평가
- 금천구 여성 노동자 현황파악을 위한 2차 자료의 분석
- 여성노동자 건강증진요구도 파악 : 8대 업종 (정보통신, 전자, 섬유, 콜센터, 도소매, 시설관리(건물청소), 미용, 음식업)
- ✓ 사업주 및 관리자대상 설문조사 : 900개소
- ✓ 여성 노동자 초점 집단 면접 조사 : 위 8개 업종 각 1팀 (5명 내외)



## 사업주 설문조사

- 조사대상 : 가산단지 사업체 리스트에서 무작위 표본추출 912개소 대상
- 조사방법 : 전화설문조사
- 조사내용 : 사업장 기본 특성, 건강관리실태 및 건강사업 요구도

근로자수	사업장수	백분률
1 ~ 4	142	15.57
5 ~ 9	280	30.70
10 ~ 19	253	27.74
20 ~ 49	172	18.86
50 ~ 99	38	4.17
100 ~ 299	23	2.52
300인 이상	4	0.44

업종	사업장수	백분률
제조업	552	60.5
정보통신	212	23.2
서비스업	148	16.2

응답자	명	%
사업주	87	9.54
보건업무담당자	110	12.06
기타 관리자	402	44.08
평사원	313	34.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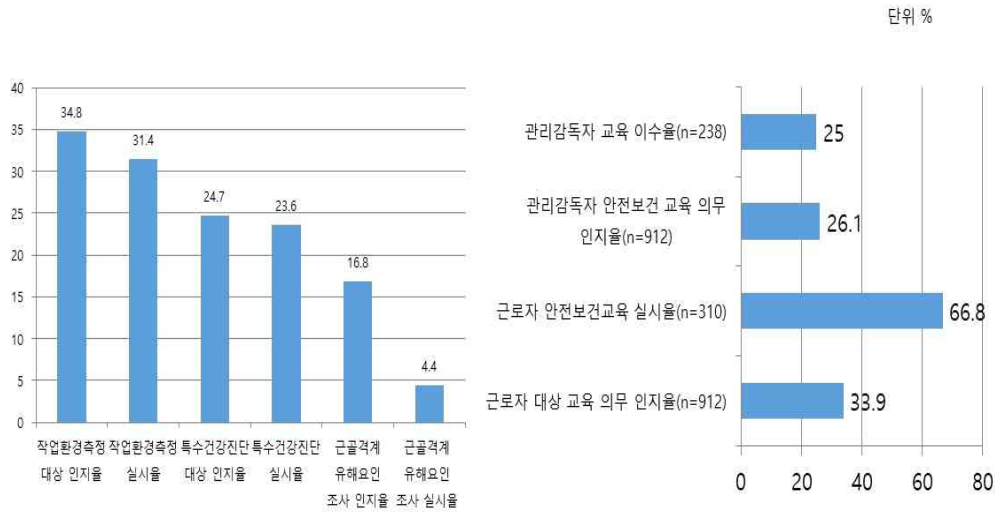
## 사업장의 근로자 건강관리 실태

보건관리자선임	사업장 수	백분률
보건관리대행	25	2.7
자체 선임	73	8.0
선임하지 않음	250	27.4
선임의무 없음(50인 미만)	564	61.8

사업장 규모	사업장수	백분률
1 ~ 4	17	12
5 ~ 9	58	20.7
10 ~ 19	62	24.5
20 ~ 49	43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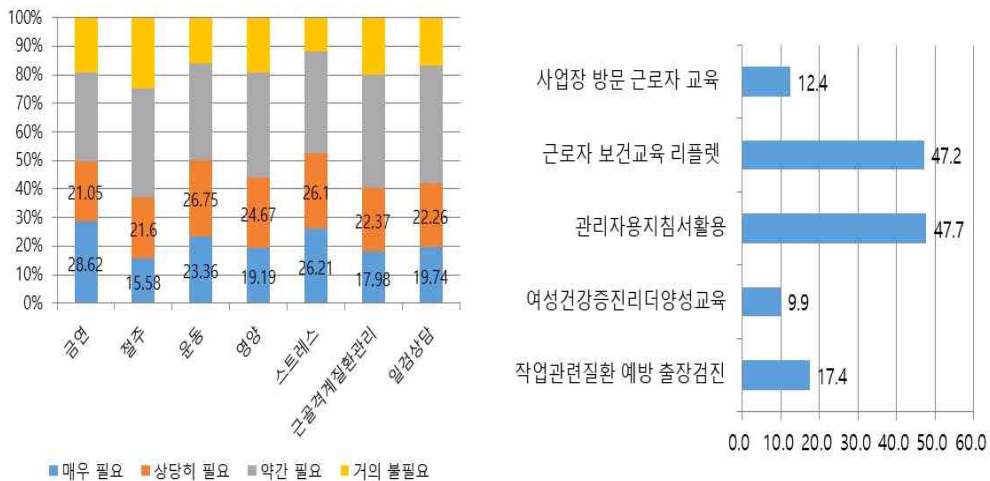
건강진단 실시 방법	사업장 수	백분률
회사에서 일정을 잡아 일괄적으로 실시	437	47.9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회사는 결과표 보관	131	14.4
개별적으로 실시하도록 안내만 함	239	26.2
일반건강진단과 관련한 특별한 활동을 안 함	105	11.5

## 직업병 예방활동 인지율 및 실천율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사업장 89개소  
 근골격계 부담작업 보유 사업장 281개소

## 사업주의 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인식



사업주의 건강증진 사업 요구도

가산여행 사업 참여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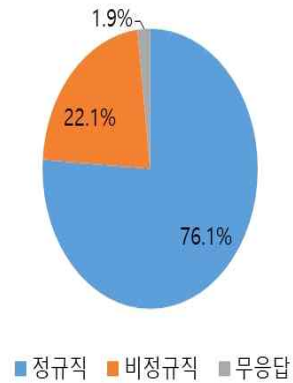
		제조업			서비스업			
		전자	의류봉제	콜센터	정보통신	의류판매	음식	정소
노동시장	연령(세)	46.2	53.5	39.5	41.7	44.7	49.1	61.6
	경력기간	10년	10.5년	3.6년	7.5년	9.2년	7.6년	6.3년
	취업경로	지인소개 신문/거주지	지인소개 거주지	지인소개	지인소개	지인소개 주거지	지인소개 주거지	지인소개 주거지
	근로일수	주5일	주6일	주5일	주6일, 7일	주6일	주6일	주6일
	근무형태	전일제	전일제	전일제(교대 근무)	전일제	전일제	전일제	전일제(교대 근무)
고용형태	정규/비정규	정규/비정규	특고	특고	정규/비정규	정규/비정규	비정규	
노동과정	근로시간	9시-6시	8시30분-7시 /8시	8시40분, 10시-5시, 6시	9,10,11,12시 (8-10시간)	9시-10시	9시30분-6시 혹은 8시30분/4시- 12시	7시-4시
	휴게시간	2시간 당 10분	10분	30분 (15:30-16)	자유	무	2시간(15시-1 7시)	조식 8시30분
	점심시간	12시-1시	12시50분-1 시40분	12시-1시	자유	11시30분-2 시사이	3시-4시	11시30분-12 시50분
	작업특징1	분업구조	분업구조	개별화	협업구조	개별화	분업/개별	개별화
	작업특징2	앉아서 일함	장시간 서서 일함	앉아서 일함	앉아서 일함	장시간 서서 일함	장시간 서서 일함	3D 업무
	작업특징3	반복작업, 속도	반복작업, 속도	고객 상호작용	시기적 몰아서 일함	고객 상호작용	고객 상호작용	고객 상호작용
	감정노동	무	무	상	하	상	상	중
	개선사항1	식수 사용	주5일제	연차휴가	연차휴가	주5일제	주5일제	주5일제
	개선사항2	연차휴가	연차휴가	임금&평가 체계	병가활용	연차휴가	연차휴가	연차휴가
개선사항3	병가 활용	기계 소음 휴게시간	소음		집중영업시 간 휴게실 사용 못함	감시통제	식사공간 샤워실	
교육 훈련	업무교육	무	유/무	직무교육	직무교육	친절교육	음식교육/무	무
	산안교육	유/무	무	무	무	유/무	유/무	무
	성희롱예방 교육	유/무	무	유/무	유/무	유/무	무	무

		제조업			서비스업			
		전자	의류봉제	콜센터	정보통신	의류판매	음식	정소
노동 환경	휴게공간	무	무	유	무	유	무	유/무
	탈의실	무	무	유(안마실)		유	무	유/무
	의자	무	유	심리상담		무	무	무
	개선사항	스트레칭 공간	환기구 환풍기	환기구 녹취(증거)		휴게실	휴게실 CCTV	휴게실 샤워&탈의실
건강 보건	질병재해	높음	높음	높음	낮음	높음	높음	높음
	산재처리	사업주 눈치	사업주 눈치	사업주 눈치	사업주 눈치	사업주 눈치	사업주 눈치	사업주 눈치
	건강검진	대부분 무	대부분 무	유/무	유/무	대부분 무	대부분 무	대부분 무
	유형1	근골격계	호흡기 질환(비염, 알러지)	두통, 소화장애, 흡연	안구 건조	하지 정맥류	하지 정맥류	낙상(계단)
	유형2	어깨, 허리	어깨	목, 어깨, 이명, 손가락	어깨, 팔, 무릎	근골격계	관절(손목), 허리	
	유형3			불면(수면장 애), 비염, 알러지	탈모	비염, 발가락, 안구건조		
	보건소 인지도	유	유	유	유/무	유	유	유
	프로그램 활용도	낮음	낮음	낮음	낮음	낮음	낮음	낮음
	보건사업 요구도1	사용주 협조	사용주 협조	사용주 협조	사업주 협조	원청 협조	야간 진료	원청 협조
보건사업 요구도2	오후 시간 활용	인근 병원	여성질환, 주말	여성전용/토 요일	오전 시간 활용 필요, 주말 병원	주말 병원		
정책개선	작업환경측 정	작업환경측 정	악성 민원 규제 감정노동 해소	의무교육	정기 휴무제 도입	휴게공간 제공	휴게공간 제공	
법제도 개선	근기법/산안 법	근기법/산안 법	근기법/산안 법	근기법/산안 법	근기법/산안 법	근기법/산안 법	근기법/산안 법	
홍보수단	사업장 유인을 발송, 문자 홍보, 카페, 사용주 교육과 협조, 원청 업체 협조							

# 여성 노동자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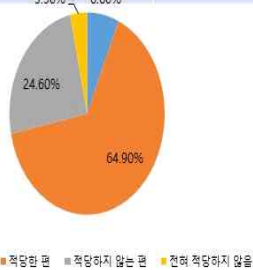
- 조사대상 - 가산디지털 산업 단지 및 인근 사업장 여성 노동자
- 조사방식 - 사업장 방문 일대일 면접조사
- 조사내용 - 개인적 특성, 건강상태, 건강위험요인 등

직종	빈도	백분률
사무직	2,426	49.1%
생산직	478	9.7%
판매직	580	11.7%
콜센터 상담원	716	14.5%
기타	709	14.4%
무응답	30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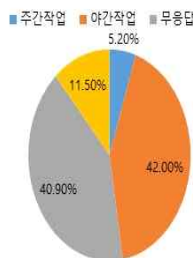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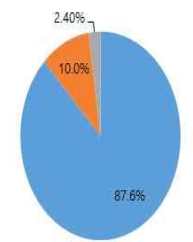


# 근무시간

일주일 근무시간	명	%
40시간 미만	709	14.4%
40-51시간	2,981	60.4%
52-59시간	591	12.0%
60시간 이상	575	11.6%
무응답	83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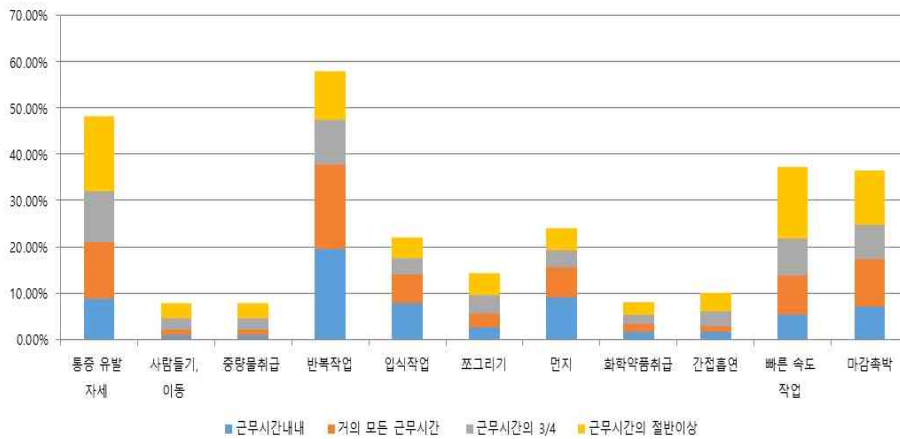
근무시간이 가정 생활 및 사회생활에 적당한가?



근무시간 중 시간 이용 융통성

## 건강의 직업적 위험요인노출

- 야간노동 10.0%, 장시간 노동 11.6%, 감정노동 26.6%



## 여성 노동자의 건강문제

- 우울증 의심 37.0%, 치료 중 우울증 0.2%
- 유방암, 자궁경부암 미수검 48.2%
- 일반검진 미수검 52.9%
- 과체중 7.8%, 비만 3.6%, 흡연 9.7%, 신체활동부족 38.5%, 문제음주 0.7%
- 천식진단 1.2%, 알레르기성 비염 16.8%, 접촉피부염 4.9%
- 하지정맥류의심 13.5%, 족저근막염 의심 17.6%
- 근골격계 질환 의심

	목 (명, %)	어깨 (명, %)	팔/팔꿈치(명, %)	손/손목 (명, %)	등/허리 (명, %)	다리 (명, %)	무릎 (명, %)	발/발목(명, %)
건강 주의	739 (15.3%)	1,495 (30.3%)	201 (4.1%)	782 (15.9%)	1,053 (21.4%)	347 (7.0%)	358 (7.3%)	431 (8.7%)
질병 의심	281 (5.8%)	510 (10.3%)	56 (1.1%)	226 (4.6%)	311 (6.3%)	100 (2.0%)	99 (2.0%)	86 (1.7%)
치료 받음	22 (0.5%)	49 (1.0%)	15 (0.3%)	25 (0.5%)	60 (1.2%)	12 (0.2%)	14 (0.3%)	34 (0.7%)

## 가산여행 소식

**금천구 보건소 · 단국대학교병원 연구진  
개사회** 2012.7.16

금천구보건소와 단국대학교병원 연구진은 금천구 가산디지털산업단지 여성노동자 개사회를 금천구보건소 4층 보건교육실에서 열어, 이 사업추진을 위한 방향과 세부 계획을 논의하였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 간담회** 2012.7.16

금천구보건소와 단국대학교병원 연구진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본부장 강성규)를 방문하여 관내 안전보건사업 추진현황과 금천구 여성 근로자 건강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링크](#)



**노동사회단체 간담회 개최**  
2012.7.21

단국대학교병원 연구진은 노동사회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천구 여성 근로자 건강증진사업 방향과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여성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노동공동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영세사업장이 참여할 수 있는 접근성이 높은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여성근로자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감정노동, 스트레스, 근로계약불이행 등의 건강문제를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을 당부했다.

**가산여행 9월 사업 추진 일정**

- 미용업, 음식업 사업주 간담회  
9/10(화) 금천구보건소
- 지역사회 의사회 간담회(예정)
- 업종별 여성근로자 집단면접조사  
각 8명 내외 참가자 모집 중  
문의 02-6324-3003

9/22(토) 오전 10시 플랜터 상담원  
오후 3시 건물청소업 청소직

9/23(일) 오전 10시 전자산업  
오후 3시 의류제조업

9/24(월) 오전 10시 미용업  
오후 2시 음식업

# 가산女행을 시작합니다

## 가산 디지털 산업단지 여성이 행복한 건강증진사업

**가산여행이란?**  
안녕하세요! 금천구보건소장 사무입니다.  
금천구보건소는 지난 5월 서울시가 25개 자치구 보건소를 대상으로 공모한 '여성 건강관리' 중 자유과제 부문에 '금천구 가산디지털산업단지 여성건강관리사업'을 제안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7월 단국대학교병원(병원장 박우성)과 협약을 맺어 2012년 12월까지 이 사업을 수행할 예정으로 사업소요예산은 1억4천5백만 원이며 전액 시비(100%)로 지원됩니다.  
가/신/여/참은 금천구보건소와 단국대학교병원이 협력하여 수행하는 건강증진사업으로 주요 대상은 여성의 수가 많거나 여성의 비율이 높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이며 무료건강검진, 여성건강교육, 방문보건사업 등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신/여/참을 통해서 금천구에서 일하는 여성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은 물론이며 이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보건소로 확대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천구에서 일하는 여성 여러분을 가/신/여/참에 초대합니다.

주최 금천구 보건소 단국대학교병원 후원 서울특별시  
사업신청 문의 02-6324-3003

## 근무시간 중에는 못 나오신다고요? 퇴근길 건강상담 부스로 오세요

**일시 · 장소**

10/8~10일(월-수) 가산디지털역 5번 출구  
10/11~12일(목-금) 독산역 2번 출구  
오후 5시 ~ 8시

**간이검진**

**검사항목**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고밀도지방, 저밀도지방

※ 최근 1년간 일반건강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데, 무료출장검진에도 못 오시는 분은 꼭 오세요. 점심식사이후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직업병 상담**

일 때문에 질병이 생겼는데 치료를 받기가 어려우신 분  
작업관련 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방법을 알고싶으신 분

근골격계 부담작업  
(단순반복작업, 불편한 작업자세, 중량물 취급)

하루 4시간 이상 서서 일하거나 천천히 걷는 작업

주당 60시간 이상 작업, 야간작업, 감정노동 및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작업

근골격계 질환  
(요통, 추간판 탈출증, 근막통 증후군, 손목 염좌, 손목터널 증후군 등)

하지정맥류, 요통, 무릎 통증, 족저근막염

뇌심혈관질환  
(뇌졸중, 심근경색, 협심증)  
정신건강문제  
(우울증, 적응장애 등)



- 32 -



## 사업주가 알아야 할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일하는 여성을 위한 건강정보 : 정신건강

### ④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체적, 체력적,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함)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 근로 안전관리를 포함한 관리, 예방관리, 평가관리 조차 및 사업장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하는 때에는 다음 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 작업내용, 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근로시간 간혹, 장시간 순환작업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 작업장, 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시 당해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3.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4. 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차량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5. 건강진단 결과 상지척을 통해 근로자에 근로자를 적절히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관리 가능성 및 대책 등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에 충분히 설명할 것.
6. 뇌졸중, 심혈관 질환 예방 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 ⑤ 직무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업무설계(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의 권고)

스트레스 유발 작업조건	작업설계방법
과중한 업무, 적은 휴식시간, 긴 근무시간, 고대근무, 지나친 일강도 등	과도한 업무량을 피하고 업무량에 맞추어 적당도를 설정할 수 있게 한다. 근로자의 가정, 사회생활에 맞게 근무양도를 배려한다.
개인적 능력 이상이나 지나친 책임의 요구되는 업무	직업의 요구내용은 개인의 능력과 동등한 수준이 되도록 한다.
의사결정에 노동자 참여, 조직내 의사소통 부족	근로자를 스스로 작업에 대한 결정과 영향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작업이 기술능력의 기회가 될 뿐 아니라 일 자체의 의미가 부여되면서 완성감을 갖도록 한다.
갈등의 소지가 있거나 모호한 역할	각 업무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동료나 상사의 사회적 지지(자기) 부족할 경우, 발전가능성이 낮은 작업	근로자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한다.
자신에게 배운 작업의 변화	순간에 대한 합리적인 양상을 마련하고 사명한다. 인사규정은 여성과 남성에게 모두 공평하게 한다.

### ⑥ 일하는 여성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조치

스트레스 상황	예방대책
직업과 가정생활의 갈등	예고 있는 야근이나 퇴근, 주말 근무 등을 자제한다. 여가 시간을 확보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배려한다.
성희롱	일 년에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절차를 마련한다.
성차별	여성 근로자가 차 상무직이나 최종 가구가 등 고위 업무와 무관한 일을 할양적으로 담당하지 않도록 한다.

가산여성 가장 타밀 상담전화 122-1234, 122-1235, 122-1236, 122-1237, 122-1238, 122-1239, 122-1240, 122-1241, 122-1242, 122-1243, 122-1244, 122-1245, 122-1246, 122-1247, 122-1248, 122-1249, 122-1250, 122-1251, 122-1252, 122-1253, 122-1254, 122-1255, 122-1256, 122-1257, 122-1258, 122-1259, 122-1260, 122-1261, 122-1262, 122-1263, 122-1264, 122-1265, 122-1266, 122-1267, 122-1268, 122-1269, 122-1270, 122-1271, 122-1272, 122-1273, 122-1274, 122-1275, 122-1276, 122-1277, 122-1278, 122-1279, 122-1280, 122-1281, 122-1282, 122-1283, 122-1284, 122-1285, 122-1286, 122-1287, 122-1288, 122-1289, 122-1290, 122-1291, 122-1292, 122-1293, 122-1294, 122-1295, 122-1296, 122-1297, 122-1298, 122-1299, 122-1300, 122-1301, 122-1302, 122-1303, 122-1304, 122-1305, 122-1306, 122-1307, 122-1308, 122-1309, 122-1310, 122-1311, 122-1312, 122-1313, 122-1314, 122-1315, 122-1316, 122-1317, 122-1318, 122-1319, 122-1320, 122-1321, 122-1322, 122-1323, 122-1324, 122-1325, 122-1326, 122-1327, 122-1328, 122-1329, 122-1330, 122-1331, 122-1332, 122-1333, 122-1334, 122-1335, 122-1336, 122-1337, 122-1338, 122-1339, 122-1340, 122-1341, 122-1342, 122-1343, 122-1344, 122-1345, 122-1346, 122-1347, 122-1348, 122-1349, 122-1350, 122-1351, 122-1352, 122-1353, 122-1354, 122-1355, 122-1356, 122-1357, 122-1358, 122-1359, 122-1360, 122-1361, 122-1362, 122-1363, 122-1364, 122-1365, 122-1366, 122-1367, 122-1368, 122-1369, 122-1370, 122-1371, 122-1372, 122-1373, 122-1374, 122-1375, 122-1376, 122-1377, 122-1378, 122-1379, 122-1380, 122-1381, 122-1382, 122-1383, 122-1384, 122-1385, 122-1386, 122-1387, 122-1388, 122-1389, 122-1390, 122-1391, 122-1392, 122-1393, 122-1394, 122-1395, 122-1396, 122-1397, 122-1398, 122-1399, 122-1400, 122-1401, 122-1402, 122-1403, 122-1404, 122-1405, 122-1406, 122-1407, 122-1408, 122-1409, 122-1410, 122-1411, 122-1412, 122-1413, 122-1414, 122-1415, 122-1416, 122-1417, 122-1418, 122-1419, 122-1420, 122-1421, 122-1422, 122-1423, 122-1424, 122-1425, 122-1426, 122-1427, 122-1428, 122-1429, 122-1430, 122-1431, 122-1432, 122-1433, 122-1434, 122-1435, 122-1436, 122-1437, 122-1438, 122-1439, 122-1440, 122-1441, 122-1442, 122-1443, 122-1444, 122-1445, 122-1446, 122-1447, 122-1448, 122-1449, 122-1450, 122-1451, 122-1452, 122-1453, 122-1454, 122-1455, 122-1456, 122-1457, 122-1458, 122-1459, 122-1460, 122-1461, 122-1462, 122-1463, 122-1464, 122-1465, 122-1466, 122-1467, 122-1468, 122-1469, 122-1470, 122-1471, 122-1472, 122-1473, 122-1474, 122-1475, 122-1476, 122-1477, 122-1478, 122-1479, 122-1480, 122-1481, 122-1482, 122-1483, 122-1484, 122-1485, 122-1486, 122-1487, 122-1488, 122-1489, 122-1490, 122-1491, 122-1492, 122-1493, 122-1494, 122-1495, 122-1496, 122-1497, 122-1498, 122-1499, 122-1500, 122-1501, 122-1502, 122-1503, 122-1504, 122-1505, 122-1506, 122-1507, 122-1508, 122-1509, 122-1510, 122-1511, 122-1512, 122-1513, 122-1514, 122-1515, 122-1516, 122-1517, 122-1518, 122-1519, 122-1520, 122-1521, 122-1522, 122-1523, 122-1524, 122-1525, 122-1526, 122-1527, 122-1528, 122-1529, 122-1530, 122-1531, 122-1532, 122-1533, 122-1534, 122-1535, 122-1536, 122-1537, 122-1538, 122-1539, 122-1540, 122-1541, 122-1542, 122-1543, 122-1544, 122-1545, 122-1546, 122-1547, 122-1548, 122-1549, 122-1550, 122-1551, 122-1552, 122-1553, 122-1554, 122-1555, 122-1556, 122-1557, 122-1558, 122-1559, 122-1560, 122-1561, 122-1562, 122-1563, 122-1564, 122-1565, 122-1566, 122-1567, 122-1568, 122-1569, 122-1570, 122-1571, 122-1572, 122-1573, 122-1574, 122-1575, 122-1576, 122-1577, 122-1578, 122-1579, 122-1580, 122-1581, 122-1582, 122-1583, 122-1584, 122-1585, 122-1586, 122-1587, 122-1588, 122-1589, 122-1590, 122-1591, 122-1592, 122-1593, 122-1594, 122-1595, 122-1596, 122-1597, 122-1598, 122-1599, 122-1600, 122-1601, 122-1602, 122-1603, 122-1604, 122-1605, 122-1606, 122-1607, 122-1608, 122-1609, 122-1610, 122-1611, 122-1612, 122-1613, 122-1614, 122-1615, 122-1616, 122-1617, 122-1618, 122-1619, 122-1620, 122-1621, 122-1622, 122-1623, 122-1624, 122-1625, 122-1626, 122-1627, 122-1628, 122-1629, 122-1630, 122-1631, 122-1632, 122-1633, 122-1634, 122-1635, 122-1636, 122-1637, 122-1638, 122-1639, 122-1640, 122-1641, 122-1642, 122-1643, 122-1644, 122-1645, 122-1646, 122-1647, 122-1648, 122-1649, 122-1650, 122-1651, 122-1652, 122-1653, 122-1654, 122-1655, 122-1656, 122-1657, 122-1658, 122-1659, 122-1660, 122-1661, 122-1662, 122-1663, 122-1664, 122-1665, 122-1666, 122-1667, 122-1668, 122-1669, 122-1670, 122-1671, 122-1672, 122-1673, 122-1674, 122-1675, 122-1676, 122-1677, 122-1678, 122-1679, 122-1680, 122-1681, 122-1682, 122-1683, 122-1684, 122-1685, 122-1686, 122-1687, 122-1688, 122-1689, 122-1690, 122-1691, 122-1692, 122-1693, 122-1694, 122-1695, 122-1696, 122-1697, 122-1698, 122-1699, 122-1700, 122-1701, 122-1702, 122-1703, 122-1704, 122-1705, 122-1706, 122-1707, 122-1708, 122-1709, 122-1710, 122-1711, 122-1712, 122-1713, 122-1714, 122-1715, 122-1716, 122-1717, 122-1718, 122-1719, 122-1720, 122-1721, 122-1722, 122-1723, 122-1724, 122-1725, 122-1726, 122-1727, 122-1728, 122-1729, 122-1730, 122-1731, 122-1732, 122-1733, 122-1734, 122-1735, 122-1736, 122-1737, 122-1738, 122-1739, 122-1740, 122-1741, 122-1742, 122-1743, 122-1744, 122-1745, 122-1746, 122-1747, 122-1748, 122-1749, 122-1750, 122-1751, 122-1752, 122-1753, 122-1754, 122-1755, 122-1756, 122-1757, 122-1758, 122-1759, 122-1760, 122-1761, 122-1762, 122-1763, 122-1764, 122-1765, 122-1766, 122-1767, 122-1768, 122-1769, 122-1770, 122-1771, 122-1772, 122-1773, 122-1774, 122-1775, 122-1776, 122-1777, 122-1778, 122-1779, 122-1780, 122-1781, 122-1782, 122-1783, 122-1784, 122-1785, 122-1786, 122-1787, 122-1788, 122-1789, 122-1790, 122-1791, 122-1792, 122-1793, 122-1794, 122-1795, 122-1796, 122-1797, 122-1798, 122-1799, 122-1800, 122-1801, 122-1802, 122-1803, 122-1804, 122-1805, 122-1806, 122-1807, 122-1808, 122-1809, 122-1810, 122-1811, 122-1812, 122-1813, 122-1814, 122-1815, 122-1816, 122-1817, 122-1818, 122-1819, 122-1820, 122-1821, 122-1822, 122-1823, 122-1824, 122-1825, 122-1826, 122-1827, 122-1828, 122-1829, 122-1830, 122-1831, 122-1832, 122-1833, 122-1834, 122-1835, 122-1836, 122-1837, 122-1838, 122-1839, 122-1840, 122-1841, 122-1842, 122-1843, 122-1844, 122-1845, 122-1846, 122-1847, 122-1848, 122-1849, 122-1850, 122-1851, 122-1852, 122-1853, 122-1854, 122-1855, 122-1856, 122-1857, 122-1858, 122-1859, 122-1860, 122-1861, 122-1862, 122-1863, 122-1864, 122-1865, 122-1866, 122-1867, 122-1868, 122-1869, 122-1870, 122-1871, 122-1872, 122-1873, 122-1874, 122-1875, 122-1876, 122-1877, 122-1878, 122-1879, 122-1880, 122-1881, 122-1882, 122-1883, 122-1884, 122-1885, 122-1886, 122-1887, 122-1888, 122-1889, 122-1890, 122-1891, 122-1892, 122-1893, 122-1894, 122-1895, 122-1896, 122-1897, 122-1898, 122-1899, 122-1900, 122-1901, 122-1902, 122-1903, 122-1904, 122-1905, 122-1906, 122-1907, 122-1908, 122-1909, 122-1910, 122-1911, 122-1912, 122-1913, 122-1914, 122-1915, 122-1916, 122-1917, 122-1918, 122-1919, 122-1920, 122-1921, 122-1922, 122-1923, 122-1924, 122-1925, 122-1926, 122-1927, 122-1928, 122-1929, 122-1930, 122-1931, 122-1932, 122-1933, 122-1934, 122-1935, 122-1936, 122-1937, 122-1938, 122-1939, 122-1940, 122-1941, 122-1942, 122-1943, 122-1944, 122-1945, 122-1946, 122-1947, 122-1948, 122-1949, 122-1950, 122-1951, 122-1952, 122-1953, 122-1954, 122-1955, 122-1956, 122-1957, 122-1958, 122-1959, 122-1960, 122-1961, 122-1962, 122-1963, 122-1964, 122-1965, 122-1966, 122-1967, 122-1968, 122-1969, 122-1970, 122-1971, 122-1972, 122-1973, 122-1974, 122-1975, 122-1976, 122-1977, 122-1978, 122-1979, 122-1980, 122-1981, 122-1982, 122-1983, 122-1984, 122-1985, 122-1986, 122-1987, 122-1988, 122-1989, 122-1990, 122-1991, 122-1992, 122-1993, 122-1994, 122-1995, 122-1996, 122-1997, 122-1998, 122-1999, 122-2000, 122-2001, 122-2002, 122-2003, 122-2004, 122-2005, 122-2006, 122-2007, 122-2008, 122-2009, 122-2010, 122-2011, 122-2012, 122-2013, 122-2014, 122-2015, 122-2016, 122-2017, 122-2018, 122-2019, 122-2020, 122-2021, 122-2022, 122-2023, 122-2024, 122-2025, 122-2026, 122-2027, 122-2028, 122-2029, 122-2030, 122-2031, 122-2032, 122-2033, 122-2034, 122-2035, 122-2036, 122-2037, 122-2038, 122-2039, 122-2040, 122-2041, 122-2042, 122-2043, 122-2044, 122-2045, 122-2046, 122-2047, 122-2048, 122-2049, 122-2050, 122-2051, 122-2052, 122-2053, 122-2054, 122-2055, 122-2056, 122-2057, 122-2058, 122-2059, 122-2060, 122-2061, 122-2062, 122-2063, 122-2064, 122-2065, 122-2066, 122-2067, 122-2068, 122-2069, 122-2070, 122-2071, 122-2072, 122-2073, 122-2074, 122-2075, 122-2076, 122-2077, 122-2078, 122-2079, 122-2080, 122-2081, 122-2082, 122-2083, 122-2084, 122-2085, 122-2086, 122-2087, 122-2088, 122-2089, 122-2090, 122-2091, 122-2092, 122-2093, 122-2094, 122-2095, 122-2096, 122-2097, 122-2098, 122-2099, 122-2100, 122-2101, 122-2102, 122-2103, 122-2104, 122-2105, 122-2106, 122-2107, 122-2108, 122-2109, 122-2110, 122-2111, 122-2112, 122-2113, 122-2114, 122-2115, 122-2116, 122-2117, 122-2118, 122-2119, 122-2120, 122-2121, 122-2122, 122-2123, 122-2124, 122-2125, 122-2126, 122-2127, 122-2128, 122-2129, 122-2130, 122-2131, 122-2132, 122-2133, 122-2134, 122-2135, 122-2136, 122-2137, 122-2138, 122-2139, 122-2140, 122-2141, 122-2142, 122-2143, 122-2144, 122-2145, 122-2146, 122-2147, 122-2148, 122-2149, 122-2150, 122-2151, 122-2152, 122-2153, 122-2154, 122-2155, 122-2156, 122-2157, 122-2158, 122-2159, 122-2160, 122-2161, 122-2162, 122-2163, 122-2164, 122-2165, 122-2166, 122-2167, 122-2168, 122-2169, 122-2170, 122-2171, 122-2172, 122-2173, 122-2174, 122-2175, 122-2176, 122-2177, 122-2178, 122-2179, 122-2180, 122-2181, 122-2182, 122-2183, 122-2184, 122-2185, 122-2186, 122-2187, 122-2188, 122-2189, 122-2190, 122-2191, 122-2192, 122-2193, 122-2194, 122-2195, 122-2196, 122-2197, 122-2198, 122-2199, 122-2200, 122-2201, 122-2202, 122-2203, 122-2204, 122-2205, 122-2206, 122-2207, 122-2208, 122-2209, 122-2210, 122-2211, 122-2212, 122-2213, 122-2214, 122-2215, 122-2216, 122-2217, 122-2218, 122-2219, 122-2220, 122-2221, 122-2222, 122-2223, 122-2224, 122-2225, 122-2226, 122-2227, 122-2228, 122-2229, 122-2230, 122-2231, 122-2232, 122-2233, 122-2234, 122-2235, 122-2236, 122-2237, 122-2238, 122-2239, 122-2240, 122-2241, 122-2242, 122-2243, 122-2244, 122-2245, 122-2246, 122-2247, 122-2248, 122-2249, 122-2250, 122-2251, 122-2252, 122-2253, 122-2254, 122-2255, 122-2256, 122-2257, 122-2258, 122-2259, 122-2260, 122-2261, 122-2262, 122-2263, 122-2264, 122-2265, 122-2266, 122-2267, 122-2268, 122-2269, 122-2270, 122-2271, 122-2272, 122-2273, 122-2274, 122-2275, 122-2276, 122-2277, 122-2278, 122-2279, 122-2280, 122-2281, 122-2282, 122-2283, 122-2284, 122-2285, 122-2286, 122-2287, 122-2288, 122-2289, 122-2290, 122-2291, 122-2292, 122-2293, 122-2294, 122-2295, 122-2296, 122-2297, 122-2298, 122-2299, 122-2300, 122-2301, 122-2302, 122-2303, 122-2304, 122-2305, 122-2306, 122-2307, 122-2308, 122-2309, 122-2310, 122-2311, 122-2312, 122-2313, 122-2314, 122-2315, 122-2316, 122-2317, 122-2318, 122-2319, 122-2320, 122-2321, 122-2322, 122-2323, 122-2324, 122-2325, 122-2326, 122-2327, 122-2328, 122-2329, 122-2330, 122-2331, 122-2332, 122-2333, 122-2334, 122-2335, 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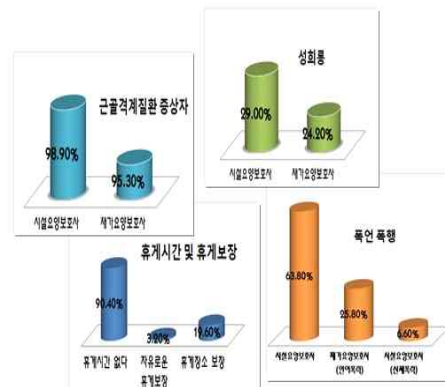
# 음식업 방문건강사업 개요

- 가산디지털단지내 음식점종 10개소
- 외식업 중앙회 금천지회 협조
- 간담회 시행 : 메이퀸컨벤션(9.10)
- 한식,중식,일식,캐터링 등 골고루 선정
- 7개소 32명상담 완료(10.22, 23, 29)
- 여성근로자 중 조선족 분포가 높음
  - 건강보험 미적용으로 병원 방문 어려움
  - 1일 2시간 정도의 휴식시간(3시~5시)만이 개인 외출 가능 시간
  - 기초검사나 일반검진 미 실시자 많음
  - 33명 실시자 중 1명은 당뇨 문제 심각 → 병원 권유
- 3인 1팀 방문
  - 의사 : 건강 상담
  - 간호사 : 기초 문진, 대사증후군 검사
  - 산업위생기사 : 업종별 현장 체크, 작업 관리지도, 근골격계부담작업 교육 등
- 손님에 의한 간접 흡연 노출 호소
- 화상, 베임, 미끄러짐 등 안전사항에 대한 문제점이 체크리스트 상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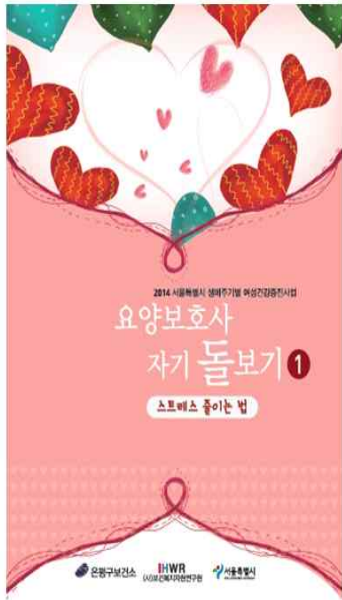
# 2012-2014 은평구 돌봄노동자 건강증진 사업



돌봄노동자 건강실태



# 요양보호사 스트레스 완화 매뉴얼



요양보호사 자기 돌보기 1

스트레스 줄이는 법

스트레스와 건강에 관한 몇가지 사실 7

요양보호사 스트레스 다루기 13

1. 내담자 때문에 속상하다면 14
2. 보호자와 관행에서 이질감을 느낀다면 20
3. 일에서 사람들과 부딪힌다면 26
4. 부족한 업무량 요구된다면 32
5. 갑작스런 돌봄으로 사면된다면 40
6. 애인과 이혼이 된다면 46
7. 직장 근황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면 52
8. 삶이나 기쁨이 사라진다면 58

도움받을 수 있는 곳, 함께 해주실 사람들 64

## 5. 감정노동으로 지친다면

### 사때 하나 내 진짜 감정과는 다르게 표현해야 할 때

창피해 남몰래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비록 서글퍼지만, 서로서로를 대할 때는 따뜻한 말투, 부드러운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호자들이 전화 오는 날에는 속으로 '참을 인내'를 수십 번 씹습니다.  
 결국 지극히 당연한 일을 돌보아야 그 보호자를 보며 사구하여 대항해 합니다.  
 어떤들 쓰고 쓰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 읽어 가기

- 감정 노동이란? 진짜 감정에 상관없이, 일에서 '보여줘야 하는' 감정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 감정 불일치(부조화)상황이란 '진짜 감정'과 '일에서 드러내야 하는 감정'이 서로 다른 경우입니다.
- 단순히 대상자에 대한 애의를 지닌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일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일로 인한 피로감을 잘 들어줘야 합니다.

#### 같은 문제 다르게 풀기

용퇴서는 남편을 지켜보면서 보호자들이 이해가 되었고 이전보다 희도 될 것입니다. 또한 자기 역할에 의의 부여를 위해 개인적인 습관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용퇴서는 동료들과의 공감어린 수다를 통해, 누구라도 대하기 힘든 보호자도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자신이 그 보호자들을 응대하려고 하여 '상대방이 좋다, 되는 곳은 아니라는' 확신도 갖게 되었습니다.

#### 기억해 두기

- 공감은 감정 노동의 피로를 오히려 줄여줍니다.
-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옳다는 것이 아니며, 내 감정과 생각을 부정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 재충전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합니다. 퇴근하는 순간 바깥의 일은 모두 내려놓고 서로 공감하고 지지해줄 사람들과의 시간을 반드시 갖습니다. (19쪽 103)



# 서울시 지역사회참여형 여성건강사업



자치구	'12년(4)	'13년(6)	'14년(8)	'15년(8)	'16년(7)
도봉구	지역여성건강 네트워크 구축	더불어 만드는 여성건강마을	더불어 만드는 여성건강마을	여성 흡주자 위한 치유 프로젝트	-
금천구	여성근로자건강관리	-	-	-	-
은평구	돌봄여성 가강관리	여성돌봄 근로자 가강관리	여성돌봄 근로자 가강관리	-	-
강동구	젠더관점에서 지역 보건사업 발전 방안	장애여성 건강지원 네트워크 구축	장애여성 건강지원 네트워크 구축	장애여성 건강지원 네트워크 구축	장애여성 건강지원 네트워크 구축
서동구		여성노인 건강관리	여성노인 건강관리	-	-
서초구		여성노인 건강관리	여성노인 건강관리	-	-
동대문구		전통시장 근로여성 건강관리	전통시장 근로여성 건강관리	전통시장 근로여성 건강관리	전통시장 근로여성 건강관리
강북구			감정노동여성 건강관리	감정노동여성 건강관리	감정노동여성 건강관리
마포구			전통시장 근로여성 건강지원 네트워크	전통시장 근로여성 건강지원 네트워크	전통시장 근로여성 건강지원 네트워크
영등포구				전통시장 근로여성 건강관리	전통시장 근로여성 건강관리
중랑구					보육교사 건강관리
중구					보육교사 건강관리

2012 서울시 금천구 여성건강관리사업

In-Jung Cho, Hyunjoo Kim, Sinye Lim, Sung-Soo Oh, Sungjin Park, and Hee-Tae Kang. Emotional labor and dysmenorrhea in women working in sales and call centers. *Ann Occup Environ Med*. 2014; 26: 45.

Chung YJ, Jung WC, Kim H, Cho SS. Association of Emotional Labor and Occupational Stressors with Depressive Symptoms among Women Sales Workers at a Clothing Shopping Mall in the Republic of Korea: A Cross-Sectional Study. *Int J Environ Res Public Health*. 2017 Nov 23;14(12).

## 근로자건강센터 사업 목표

노동자의 업무상 질병 예방과 삶의 질 향상



### ▶ 근로자건강센터 설치 근거

- 산업법 제61조(신재예방시설) : 고용부장관은 근로자건강유지증진 위한 시설 설치운영
- 고시 2013-49(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 제20조 사후관리조치를 근로자건강센터에서 가능

### ▶ 근로자건강센터 설치 운영 과정

- 2005년 공공보건의료확충 종합계획에 의거 취약계층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으로 '지역산업보건센터' 설치계획수립
- 2007년 안산 시화단지에 '지역산업보건센터' 설치 운영 시작
- 2011년 운영예산을 신재기금으로 변경하고 '근로자건강센터'로 개칭 운영

# 서울근로자건강센터의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2013년)

센터 내방 상담

● 뇌 심혈관계 기초질환 검사와 상담

● 근골격계 질환 및 증상 관리

● 스트레스 지속상담

● 집단운동 프로그램 (코어강화, 스트레칭)

● 스트레스 완화 (미술치료, 자기이해, 마음 다스리기, 감정표현, 범우스트레스극복)

이동 상담

● 퇴근길 건강상담

● 방문 건강상담

의사  
심리상담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 건강강좌

- 뇌 심혈관/근골격계 질환 예방

- 스트레스 대처법

● 감정노동 치유

개인피트니스센터

집단피트니스센터



몸도 가뿐, 마음도 가뿐  
서울근로자건강센터의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1577-64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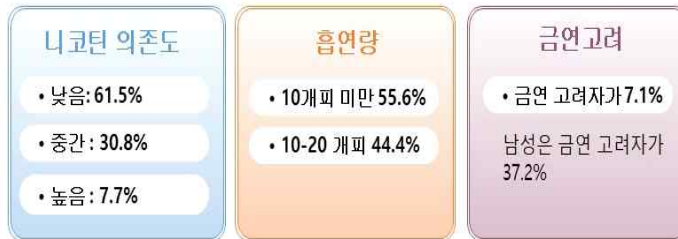
# 네트워크를 활용한 포괄서비스(2013년)

협력기관과 네트워크 활용 건강과 안전뿐 아니라 복지향상 도모



# 서울근로자건강센터 여성 금연 프로그램

여성 흡연의 특성 : 건강에 덜 유해하다?



## 여성 금연 사업 현황

84명, 145건의 금연상담  
금연 고려자 7명중  
1명이 4주 성공,  
3개월 성공자 아직 없음

- S** 처음 시도한 소기업 여성 대상 금연사업
- W** 늦은 사업시작시기 - 3개월 추적 어려움
- O** 여성 흡연의 특성에 근거한 전략필요
- T** 비밀보장 확보

# 서울근로자건강센터의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 예방사례(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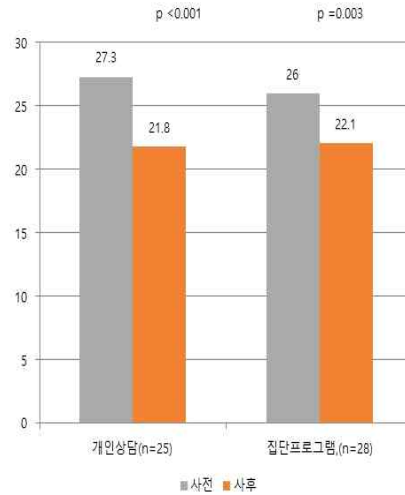
연번	성	연령	직종 (부담직업)	진단명	초기 VAS	중재 (횟수)	후기 VAS
1	여	55	음식서비스 (주량물, 단순반복작업)	요통, 외상과염 어깨 근막통증후군	6	개인(2) 집단(2)	3
2	여	65	건물청소 (단순반복작업)	어깨 근막통증후군, 손목염좌손 가락 퇴행성 관절염	6	물리(2)	2
3	여	47	요양보호사 (사람이동)	어깨 근막통증후군	6	개인(5)	1
4	여	49	생산직 (주량물, 반복작업)	요통	6	개인(5)	3
5	여	55	배달서비스직 (주량물)	어깨 회전근개파열 의심	7	개인(5)	3

# 서울근로자 건강센터의 직무스트레스 완화 집단프로그램(2013년)

프로그램 구성

제목	내용	구성	총 참여자	2회이상 참여율
미술치료 (2차)	자유로운 연상을 통한 창작활동을 통해 스트레스완화와 자기수용을 도모	4주	11	63%
감정의 알아차림 표현(3차)	다양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적절하게 표현	4주	11	81.8%
자기이해 프로그램(3차)	대인관계 속에서 자신의 사고와 행동패턴을 인식	4주	12	58%
마음 다스리기(1차)	자신의 감정을 알아가고 사회관계 대처의 향상을 도모	4주	9	77.8%
업무스트레스 극복하기(1차)	근로자의 의사소통 개선 및 감정조절, 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	8주	14	71.4%

프로그램 효과평가 : PWI 변화



# 서울시 유통업 취약 여성 노동자 감정노동 치유 회복 프로그램 개발



짧은 시간에 많은 걱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다 풀려고 하는 것은 어렵다.  
 적은 유문한 점진적 학습능력과 원주도 없어서 다룬은 상아어  
 하던데 모든 일 소중히 생각 합니다.

행복한 내일 준비를 위해서 하루 있는 마음 놓아  
 있는 기회이다.  
 화 재빨리 변화 중에 잘의 시간을 통해  
 즐겁게 -  
 변의 안색이 밝아.

예전에는 어떤 방법으로 감정을 다뤄야 하는지 방법  
 몰라서 힘들었는데 앞으로는 모든 방법 교육으로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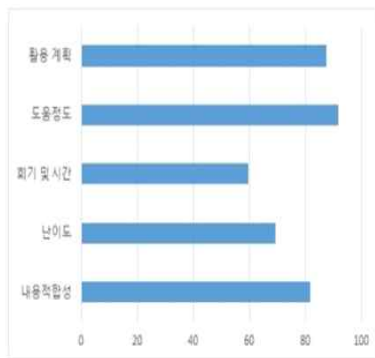
서론 필요한 내용은 어떤 서론이 될것것고  
 중요성이, 생활을 통해 얻은 것들이거나  
 초점은 되도록이면 문화적인 차이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감정노동치유 프로그램 참여자소감

# 직무스트레스 관리 강사 양성 프로그램 : 화장품 판매회사의 예(2015년)

4일간 24시간 20명 집중 교육 시행 : 교육만족도와 시행후 결과

마인드케어 교육전문가 과정 참여자의 만족도(n=20)



	A	B	C
시기	10월, 11월	11월	11월
회차 당 진행인원	2회, 40~50명	1회, 15~30명	1회, 40~90명
진행 시간 (횟수)	1시간(2회)	2시간(1회)	2시간(1회)
대상 및 인원	930명	500명	1,800명
교육 내용	스트레스 개요 사생감 훈련 (인지치료적 접근)	스트레스 개요 강점의 인식과 활용 (긍정심리학 기반)	스트레스 개요 사생감 훈련 (인지치료적 접근)
비고	매달 진행되는 서비스 교육 시간에 진행	매달 진행되는 서비스 교육 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려 진행	11월 정기교육 시간에 별도의 테마 교육으로 개설하여 진행

## 2018년 서울근로자건강센터 우수 사례

### 성희롱 발생 사업장의 트라우마 후 정신건강 관리 사례

####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2017. 10. 31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A사업장 중계사들의 성희롱 피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대책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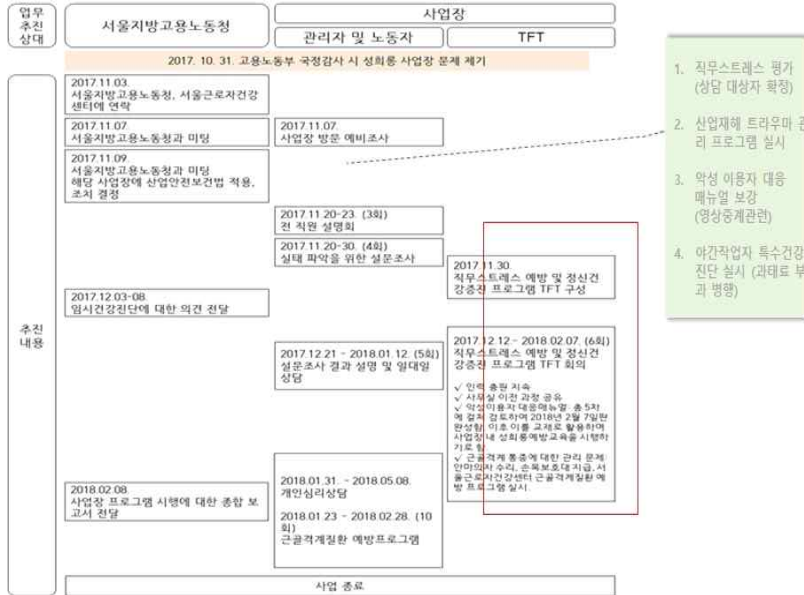
어렵지 않을  
까요?  
센터에서 할  
수 없다고  
할게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사건 해결을 위해 서울근로자건강센터에 자문 등 요청

## 2018년 서울근로자건강센터 우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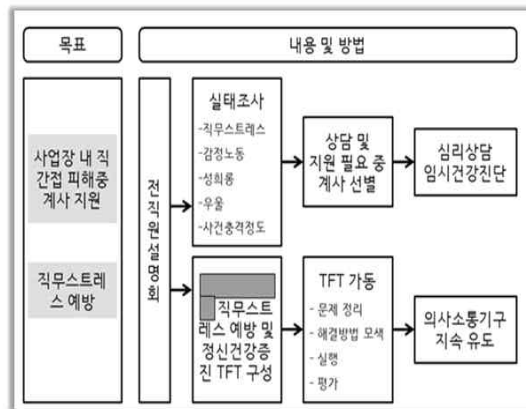
### 추진 경과



근로자 건강 센터 새 서울근로자건강센터

## I. 2018년 서울근로자건강센터 우수 사례

### 4.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근로자 건강 센터 새 서울근로자건강센터

## 학교급식종사자 건강증진 프로그램 사업 결과

'찾아가는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지원 프로그램'	센터-분소	20개교	39회	225명
그 외 지원학교(신청-내방/이동)	센터	5개교	10회	87명
	분소	8개교	16회	52명
계	센터-분소	33개교	65회	364명

\* 11.19 교육청 내방 회의 / 12.21. 결과보고서 제출

### -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안전보건교육 프로그램 -

\* 2019. 2월~3월 중/11개 교육청

시간	분야	제목	강사	내용
09:00~10:00	뇌심	뇌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과 예방	최영철부센터장 (예방의학전문)	1. 뇌심혈관질환을 유발하는 개인적, 직업적 위험요인 2. 뇌심혈관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알타와 생활습관의 변화
10:20~11:00	근골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관리 방법	이승원/임인혜 운동사	1.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에게 발생하는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이해 2. 근골격계질환 예방 운동 실습
11:10~12:00		중식		
12:00~13:00				
13:00~14:00	작업 환경	학교급식 조리종사자가 알아야 할 산업재해보상보험 (30분)	박누리 산업위생관리기사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와 특성 2. 산업재해보상 보험금에 3. 산업재해보상신청 절차
		급식실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20분)		1. 세척제의 유해, 위험성 2. 세척제의 올바른 취급방법
14:20~15:00	심리	내 마음 살피기	이경호 상담심리사	1. 스트레스란? 2. 얼마나 힘든가요 (자기감진) 3. 내 병마는? (대처방법 생각해보기)
15:10~16:00		내 마음 돌보기	이경호 상담심리사	1. 내 눈에 안경(비합리적 사고방식 인식) 2. 효율적인 마음갖기(인지재구성) 3. 나에게 말해주세요(공정적 자기대화) 4. 용에 힘내기(긴장이완을 위한 방법실습)

근로자 건강 센터 새  
서울연구원소

# 여성노동자 건강관리, 지역사회 접근 사례의 교훈



## 5. 서울시의 역할과 과제

### 건강불평등 감소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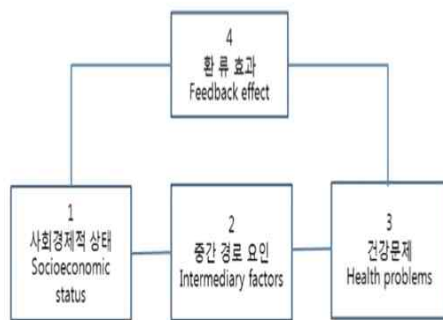


그림 25.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4가지 개입단계

- **1단계**는 근본적인 건강의 사회적 경제적 결정요인, 즉 구조적 문제의 해결이다.
- **2단계**는 중간경로들(Intermediary pathway), 즉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적, 사회심리적, 행태적 요인에 대한 개입으로 건강증진사업을 통한 형평성 향상은 대부분 이 단계에 속한다. 이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사업의 예는 주택정책, 지역사회개발, 건강도시를 비롯한 생활공간에서의 사업, 작업장 건강사업, 지역 당국의 환경개선 정책, 보건교육과 개인기술의 개발, 건강보호 등 이다.
- **3단계**는 건강이나 장애에 대한 지원 서비스로 필요에 맞는 자원의 배분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형평성 보장 등을 통해 건강형평성을 달성할 수 있다.
- **4단계**는 장애나 질환이 사회경제적 지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소득보장, 장애수당, 사고 보상 등을 예를 들 수 있다.

Ministry of Health, New Zealand. Reducing Inequalities in Health. Wellington  
Government of New Zealand. 2002

# 서울시

구분	내용	
<p>중정한 고용과 건강한 일터: 모든 서울시민은 중정한 고용계약에 따라 생활임금을 받으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p>		
영역	고용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가 한시입시적으로 직접 고용하거나 용역·하청매진 등으로 간접고용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증진</li> <li>· 서울시가 직·간접적으로 고용한 노동자에게 적절한 임금 보장 (서울 생활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는 경우 없도록)</li> <li>· 서울시가 직·간접적으로 고용한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혹은 직장 협의회 등 노동자 자치활동 지원</li> <li>· 서울시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 및 근로조건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 보장</li> </ul>
	규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가 발주하는 용역이나 물품 구매에 참여하는 사업체는 최저임금 규정, 안전보건 규정 준수하도록 제도화 (부당노동행위, 산업재해, 환경오염 등의 이력을 평가 반영)</li> </ul>
	규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약노동자 고용 조건 및 근로환경에 대한 규제 강화</li> </ul>
	기획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훈련 프로그램 강화 (특히 취약계층)</li> </ul>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행최도 사업 실천율, 대상집단 포괄 정도 (정근성) 등</li> <li>· 결과최도 평균 임금, 산재 발생율, 노동조합 조직율 등</li> </ul>	
관련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정부 (고용노동부 등), 지방노동청, 민간기업 등</li> <li>· 노동조합 대표제 및 노동사회단체</li> </ul>	
관련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희망취업 멘토스쿨, 비정규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프로그램 등 &lt;부록 2&gt; 참조</li> </ul>	

출처 : 건강 서울 마스터 플랜 수립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서울의료원, 시민건강증진 연구소, 2012)

## 고용주로서의 서울시

직접 고용 및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건강증진(건물청소, 콜센터 상담원 등)

## 규제자로서의 서울시

보건위생업종에 대한 규제뿐 아니라 보건위생 업종 노동자의 건강에 대한 지원사업 실시

## 기획자로서의 서울시

지역사회내 사회적 취약 계층인 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및 건강증진 사업 수행

# 서울시 간접고용 노동자 건강관리 책임(고용주)



2005. 서울 지하철 차량기지 청소직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사진=민주노총)



2012. 9월 콜센터 노동자 인권보장 캠페인 출범식 (사진=사무금융연맹)

# 여성 노동자 건강증진 방향(기획자)

현재의 사업장 건강증진의 특징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모형

대상 집단에 취약계층에 대한 명확한 고려가 없다.

→ 취약계층이 대상 집단으로 명확하게 명시 되어야 한다.

건강증진사업의 성공을 위해 사업체가 강력하게 주도하는 방식  
→ 방식으로 진행한다.

공공적 센터가 주도하는 건강증진사업의 운영 및 관리가 필  
→ 필요하다.

민간 혹은 시민사회가 진행하는 사업은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  
→ 나버린다.

자발적 민간 혹은 시민적 접근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자  
→ 과 자원을 제공한다.

개인별 질환관리와 개인의 행동변화를 요구한다.

→ 특수한 노동 환경을 이해하고 개선할 수 있는 섬세한 정책적  
→ 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김명희 등, 취약 노동자를 위한 건강증진 사업 개발 (2007)

# 영국의 Working together(규제자)

영국의 경우, 1974년 이래 HSC/E가 주도  
하던 안전보건사업의 흐름을 가지고 있  
다가 서비스업의 비중과 소기업의 비중  
이 증가하는 새로운 상황을 맞아 작업장  
안전보건에서 지역사회 역할을 강조하  
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

400여개의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실, 상점,  
도소매 유통업, 호텔, 음식점, 주유소, 요  
양시설, 레저 산업 등에 대하여 안전보건  
을 장려할 책임을 지고 있음  
연간 1600여명의 감독관들이 일하고 있  
으며, 2007년과 2008년에 걸쳐 13 725  
건의 위반사례가 보고됨





그림 26. 영국 산업안전보건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계

## LAC Number 15/2: Inspection intervention 2007/8: Preventing work-related contact dermatitis in the catering indust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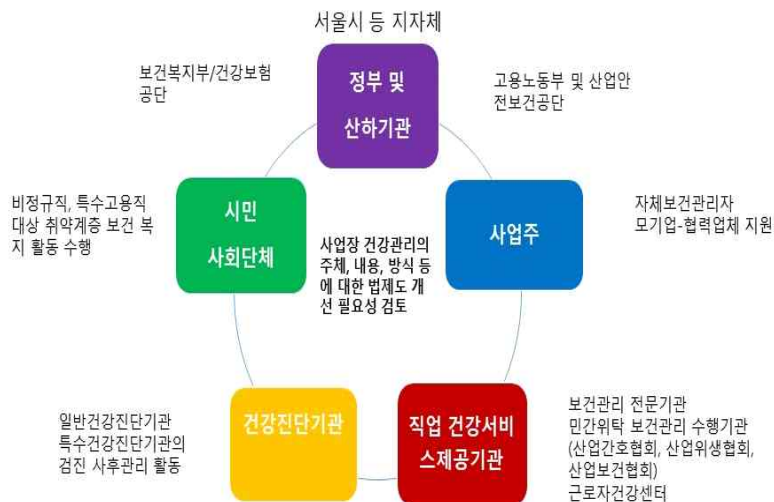
- 음식산업의 접촉피부염 예방에 대한 인식을 유발하고, 그 감소를 위한 행동학적 중재 식품 안전 담당 기관( Food Standards Agency)와 협력하여 실시함
- 식당, 호텔, 요양기관, 병원 등에 대하여 감독관은 감독행위를 하면서 접촉피부염에 대한 인식을 향상 시키도록 요청받음.
- 이 프로그램은 인식향상을 위한 것으로 강제적인 조치는 고려하지 않으나 지침에 대한 준수가 잘 안 되거나 실제적인 접촉 피부염 환자를 발견했을 때 HSE의 안전보건 감독관과 함께 방문할 수 있음.
- 식품안전감독관은 이 활동을 위해 일정한 교육훈련을 받음



표 126. 보건위생업종 건강증진 사업 내용과 방법

관련근거	건강증진 활동
영업신고(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식품위생법 제 36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의 의무 및 해당업종 건강증진 활동에 대한 안내책자 제작 보급
식품위생 단체 등: 동업자 조합(식품위생법 제 59조) 공중위생 영업자 단체의 설립(공중위생관리법 제 16조)	사업주 단체와 MOU 체결 및 사업주 요구도를 고려한 사업 기획
위생관리(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5조, 식품위생관리법) 시설기준(식품위생관리법 제 36조)	이용자뿐 아니라 종사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기준 마련하고 체크리스트 개발 및 보급 (예, 음식업근골격계 부담 작업, 세탁업 세제, 위생관리 용역업 약제, 실내공기질 관련)
보고, 출입 검사(공중위생관리법 제9조, 식품위생법 제 22조조)	출입, 검사 시 건강정보의 제공, 작업환경 점검, 직업병 예방 활동
건강진단(식품위생관리법 제 40조)	건강 진단시 건강정보, 작업관련 질환 진료 기회 제공
검사원의 교육(식품위생법 제 30조) 식품위생교육(식품위생법 제 41조) 조리사와 영양사에 대한 교육(식품위생법 제 56조)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사업주를 대상으로 건강증진 리더 양성 교육 시행(사고 및 손상, 근골격계 질환, 감정노동 등 유해인자로 인한 건강문제의 예방)
국민건강증진법 제 12조 보건교육의 실시 등	방문보건사업 (대상중후군 검사와 상담, 직업병 예방 상담 및 연계활동)
산업안전보건법 등	합동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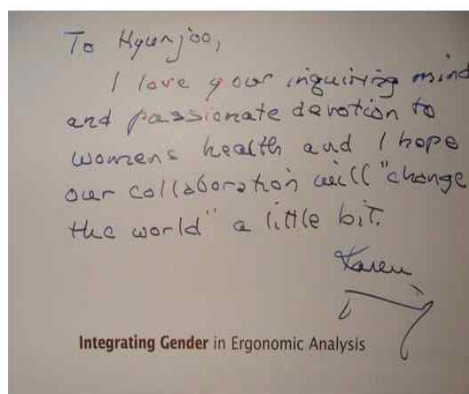
## 여성 노동자 건강관리의 연계 사업 가능성은?



무엇을 할 것인가



감사합니다!



[www.labors.or.kr](http://www.labors.or.kr)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56 운천하늘빌딩 10층  
대표전화 02-6925-4349 상담전화 02-376-0001